

임원준의 사적을 통해 본 조선시대 의서습독관의 직무와 역할

류정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교실

The Duty and Role of *Uiseoseubdoggan*(Medical Learning Officer) in the Joseon Dynasty Examined through the Historical Trace of IM Won-jun(任元濬, 1423~1500)

LYU Jeong-ah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IM Won-jun(任元濬, 1423~1500) was an Confucianism Doctor in the former period of Joseon Dynasty.

Through IM Won-jun's historical trace we could know the range of *Uiseoseubdoggan*(Medical Learning Officer)'s duty not limited to study medical books at that time but extended to medical treat, educate, recommend medical policy, personnel manage, carry out administrative work, carry out all the works concerned with medical books, make new medicines at different official period. Among these after learning duties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Dynasty awarded high grades to medical treatment for king and king's mother, but from the viewpoint of advancement of medicine controlling the top of medical policy as a chief of Jeonuigam had important meaning. The system of *Uiseoseubdoggan*(Medical Learning Officer) in the Joseon Dynasty played the role of cultivating widely the man of ability who leaded medical development by sharing the man of ability between medicine and confucianism which was dominant learning at that time, so the knowledge and professional skill of medicin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the spirit of relief of the world were spreaded across to national administration, education, publication culture, putting philosophy of filial piety into practice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 *Uiseoseubdoggan*(Medical Learning Officer), IM Won-jun, Confucianism Doctor(儒醫), Medical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medical professional manpower

I. 서론

질병과 늙음은 사람의 일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과정이다. 그것은 질병과 늙음을 겪는 과정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쇠약이 수반되고 그 끝에는 암흑과도 같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질병과 늙음과 죽음을 면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강력히 삶을 추구한 결과 인류는 현재

까지의 문명과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의(醫)는 바로 인류가 질병과 늙음과 죽음에 맞서 강력히 삶을 추구하고왔던 역사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문명과 문화를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醫)의 역사란 곧 인류의 치열한 '삶 추구'의 역사라고 할 것이다.

1392년 조선의 개국 후 태조, 정종, 태종 등 군주들은 새 나라의 건국에 발맞춘 제도와 문물을 구비함으로써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산천과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불어넣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산천과 국민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에 '삶 추구' 문명의 가장 선봉에 있는 의사(醫事) 제도의 정비와 보완은 당연히 중요하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다. 조선의 의사 제도 정비와 보완은 태조, 정종, 태종을 이어

접수 ▶ 2023년 04월 17일 수정 ▶ 2023년 05월 02일 채택 ▶ 2023년 04월 27일
교신저자 ▶ 류정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49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교실
Tel : 051-510-8451 E-mail : Lyuja@pusan.ac.kr

세종 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개국 초기 어약의 조제를 맡은 기관인 내약방(內藥房)은 전의감에 속해 있었는데 세종 25년(1443) 이조의 건의로 내의원(內醫院)으로 개칭하고 독립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¹⁾ 전의감은 여말의 전의시(典醫寺)에서 태조원년(1392) 전의감(典醫監)으로 개칭하여 창설하였는데, 그 규모를 훨씬 확대하였다.²⁾ 내의원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전의감에서는 종친과 조정 및 지방 관원의 진료, 각도 교유(敎諭)에 대한 향약관련 업무 관장, 중국산 약재의 수입과 전매, 청심원 등 구급약의 제조와 판매, 전염병 관리, 의서의 편찬과 교정, 의학교육 및 의관의 취재 등 국가 의사 전반을 관장하였다.³⁾ 성종 16년(1485)에는 조선의 통치체제를 성문화한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는데, 전의감은 이전(吏典)의 정3품 관청에 속하여 의약을 관장하고 왕실 내부의 소용약재 및 사여(賜與) 약재를 공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소속 관원은 정3품 정(正)으로부터 중9품 참봉에 이르기까지 총 21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중6품의 의학교수 2원과 정9품의 의학훈도 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로 이들 품계에 속하지 않은 습독관 30원이 소속되어 있음도 기록하고 있다.⁴⁾ ‘습독관’은 고려에는 없었던 조선에서 새로 설립한 의사 제도로서 의학 서적을 학습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는 ‘의서습독관’을 말한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어떠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습독관 제도를 설립하였던 것일까? 이 습독관 제도는 실제 조선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과연 원래의 설립 의도대로 조선인의 치열한 ‘삶 추구’에서 선봉의 역할을 해내었던 것일까? 의서습독관 제도 자체에 대한 기록 열람만으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에 충분치 않은 면이 많다. 김중권은 「조선초 의서습독에 관한 연구」에서 의서습독관의 설치배경 및 규정과 습독 의서목록을 고찰한 바 있다. 그러나 의생교육 및 일반 의원취재(醫員取才)와의 차이점을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의서습독관을 의관이 되기 위한 준비과

정으로 인식하였다.⁵⁾ 박선미 역시 「조선전기 의학교육 강화책의 내용」에서 “유능한 의원을 양성하기 위해 의서습독관을 설치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서습독관을 전업의 양성 제도로 인식하였다.⁶⁾ 김종석은 「조선 세조 년간의 의학정책과 의관들의 활동」에서 세종 대에 중국에서 연구와 의서 편찬을 목적으로 의서습독관을 설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⁷⁾ 기왕의 의서습독관에 대한 연구는 대략 이 세 연구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관 혹은 의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 그 직무를 의학 학습 및 의서편찬에 국한함으로써 ‘장차 일반 의원 및 의관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양반 관료의 양성’이라는 의서습독관의 본질적인 면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못했다. 이경록은 「조선초기 의서습독관의 운영과 활동」에서 의서습독관을 유의(儒醫)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았다.⁸⁾ 김성수는 의서습독관으로 정7품 적순부위 무관직에 오르고 안동에서 살면서 주로 침술로써 지방민을 구료한 사족 이정회(李庭檜, 1542~1613)의 삶을 소개한 바 있다.⁹⁾ 이정회는 조선시대 절대적으로 열악했던 지방 의료에 참여하여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의서습독관의 본질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 이전 왕조에 없던 제도를 의학 분야에 새로 설립하여 기대했음직한 일들, 예컨대 뛰어난 임상실력, 치료술의 개발, 의서교정 및 편찬, 의학교육, 의학분야 인사관장과 의사정책 개발 등이 한 사람의 사적에 모두 드러난 더 좋은 사례가 있다.

임원준(任元濬, 1423~1500)은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조의 오랜 기간 동안 조정 관원으로 있으면서 『창진집(瘡疹集)』, 『의약론(醫藥論)』, 『의서유취(醫書類聚)』,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등 의서 간행을 수행하고 군왕을 비롯한 왕실과 종친, 관료를 진료하였으며 의학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전의감과 사역원의 제조로서 잡학분야 행정과 인사를 관장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세조 2년(1456) 식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호조, 병조, 형조, 예조의 참판과 공조, 예조의 판서 및 의정부 좌·우 참

1) 손홍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172, 173.

2) 손홍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175, 179.

3) 손홍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176, 177, 178.

4)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1, 吏典 典醫監條. 【典醫監】 掌醫藥, 供內用及賜與. 提調二員 ○取才分數多者, 判官以上一員久任. 久任及教授訓導外, 遞兒, 兩都目. 取才居次者, 差外任 ○主簿以上, 並以出身者, 除授 ○習讀官三十員.”

5) 김중권. 「조선초 의서습독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998:15:75.

6) 박선미. 「조선전기 의학교육 강화책의 내용」. 한국교육사학. 1995:17:39.

7) 김종석. 「조선 세조 년간의 의학정책과 의관들의 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8.

8)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독관의 운영과 활동」. 연세의사학. 2019:22(1):171.

9) 김성수. 「16세기 향촌의료 실태와 사족의 대응」. 한국사연구. 2001:113:47.

찬을 역임하고 좌리공신에 책훈되어 서하군(西河君)으로 봉해졌다. 의학 분야에서의 업적 못지않게 문관으로서의 재능과 능력 발휘가 상당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가 수행한 의서 편찬 작업과 관련하여 의학적 소양이 상당한 문신이거나 유의(儒醫)로 여겨졌다. 손홍렬은 『창진집』의 편찬자로 임원준을 기술하면서 “제조 때 문과에 급제한 문관으로서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특히 의학에 밝았던 유의로서 의학교육과 의술 보급에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 인물이었다.”¹⁰⁾라고 하고, 또 의관 출신으로 의사(醫司)의 제조가 된 사례를 기술하면서 “제조는 2품 이상의 문관이 겸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상관의 직과가 없는 의관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제조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의술을 중히 여기던 성종 조에는 당상관이 여러 사람 배출되어 의관 출신 제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의관으로서 공조판서에까지 올랐던 권찬(權攢)이 내의원 제조가 되었고, 임원준도 사역원과 전의감의 제조를 오랫동안 맡고 있었다.”¹¹⁾라고 하여 임원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순된 인식은 임원준 사적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임원준이 세종 조 의서습독관 제도가 처음 시행될 무렵의 의서습독관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여기에 따라 왕조실록에 나타난 임원준의 사적을 추적하여 봄으로써 의서습독관의 전체적인 직무 범위와, 아울러 조선의 의서습독관 제도가 당시의 의학발전에 기여한 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데, 승문원에 20원의 이문(吏文)습독관, 관상감에 10원의 천문습독관, 전의감에 30원의 의학습독관, 사역원에 30원의 한학(漢學)습독관, 훈련원에 30원의 무경습독관이 배속되어 총 120원의 습독관이 있었다(표 1). 승문원의 이문습독관은 중국 및 외국과의 외교문서에 쓰이는 특수한 문체와 용어, 격식을 갖춘 한문인 이문(吏文)을 익혀 실무에 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¹²⁾ 사역원의 한학습독관은 중국어를 익혀 정통하게 되었을 경우 정식관리로 임명되어 북경에 파견될 수 있었다. 『경국대전』에 문신인 습독관은 차차 북경에 갈 수 있지만 통사(通事)는 차례를 뛰어넘어 북경에 가지 못한다고 하여 중국 파견 순서를 자세히 규정하였다.¹³⁾ 통사는 조선시대에 통역을 담당하는 실무직이었는데 『경국대전』의 이 규정을 보면 한학습독관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문신인 한학습독관이란 곧 생원이나 진사로서 한학습독관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생원이나 진사로서 의학습독관이 된 사람과 동일하게 근무한 날을 기록한 동그라미 개수가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문과의 관시(館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¹⁴⁾ 관시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선비들만을 위한 대과의 예비시험을 말한다.¹⁵⁾ 정다함은 조선시대 습독관 지위의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습독관제도는 단순한 기술학 진흥책이 아니라, 양반지배층으로서 기술학을 포함한 실용학문 분야에서 지식, 기술, 실무경험을 갖추어 정책 결정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였다고 고찰한 바 있다.¹⁶⁾

II. 본론

1. 조선의 의서습독관 제도

습독관은 『경국대전』에 총 5개의 관청에 배속되어 있는

표 1. 경국대전에 규정한 습독관 소속과 정원

이문습독관	천문습독관	의학습독관	한학습독관	무경습독관	계
승문원 20	관상감 10	전의감 30	사역원 30	훈련원 30	120

의학습독관은 의서습독관으로도 칭하였는데 다른 습독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종 대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호준은 의서습독관 제도가 중국의 송대에 이미 시행된 적

10) 손홍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327.

11) 손홍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273.

12)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경국대전』 卷1, 吏典 承文院條. 【承文院】掌事大交隣文書, 並用文臣, 都提調三員(臨政). 提調 副提調 無定數(正一品稱都提調, 二品以上稱提調, 通政稱副提調, 下同.) 參校以下 又以他官兼, 無定數, 吏文習讀官二十員”

13)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경국대전』 卷3, 禮典 獎勸條. “○漢學習讀官, 所業精通者, 啓授顯官, 赴京時考其行未行, 及仕日多少, 差違, 生員進士, 准圓點, 與醫學學習讀官同. (文臣習讀官, 亦次次赴京, 通事勿越次赴京.)”

14)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경국대전』 卷3, 禮典 獎勸條. “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 以其仕日數, 准圓點之數, 許赴文科館試.”

15) 대과의 예비시험으로 각 지방에서는 향시(鄉試), 수도에는 한성시(漢城試)가 있었고 그 외에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선비들만을 위하여 ‘성균관시’ 즉 ‘관시’라는 것이 따로 있었다.

16) 정다함. 「조선초기 습독관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 진단학보. 2003;96:34.

이 있는 것으로 고찰하였다.¹⁷⁾ 송대의 의서습독관 제도란, 1103년 송의 휘종(徽宗)이 국자감에 별도로 '의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유생(儒生)으로 하여금 의학을 학습하게 한 후 기초이론과 기본지식, 실습 기능을 두루 시험하는 3단계의 국가 공인 고시에 합격하면 여러 의사 관직과 의학박사 및 의학 교수로 임용하던 제도가 있었던 것¹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유학적 소양을 갖춘 뒤에 의학을 공부하여 의료인이 된 사람을 '유의(儒醫)'라고 일컫게 되었다.¹⁹⁾ 조선의 의서습독관은 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의학을 공부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중국 송대 '의학'에 소속되었던 유생(儒生)과 같지만 의학의 생도(生徒)와 구별되어 일종의 관원으로 대우받았다는 점에서 송대 '의학'에 소속되었던 유생(儒生)과 다르다. 실제로 『경국대전·예전』에 의학습독관과는 별개로 전의감과 혜민서의 의학생도 각각 50명, 30명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생원, 진사로서 근무 일수를 채우면 관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성균관의 유학 생도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이며, 의서의 습득 성적이 좋고 의학 공부를 마친 경우 국왕에게 보고하여 정식관리에 제수하거나 동서반 직에 자리가 나는 대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성균관 유학생도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¹⁾

표 2. 의서습독관 정원 변화

세종 의서습독관설치 1447년 이전	단종2년 1454년	세조8년 1464년	경국대전 1485년	육전조례 1876년
9	15	30	30	30

의서습독관 제도는 세종 조에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의 삼의사 외에 의서습독법을 별도로 설립하면서 처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²²⁾ 단종 2년(1454) 9원이었던 정원을 15원으로 늘리고,²³⁾ 세조 8년(1462) 정원을 30원으로 증원하면서 진료실적을 성적에 반영하는 등의 권징규정을 강화²⁴⁾한 후 1485년 『경국대전』에 수록됨으로써 조선 의사(醫事)의 정식 제도로 명문화되었다.²⁵⁾²⁶⁾²⁷⁾ 김성수는 의서습독관 제도가 16세기 후반 폐지되었다고 하였으나²⁸⁾, 고종 4년(1867) 반포된 『육전조례』에는 의서습독관 30원이 전의감에 배속되어 여전히 조선의 공식 의사 제도로 유지되고 있었다.²⁹⁾ 그러나 의서습독관 각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한 임시직을 주지 못하고 종6품의 부사과(副司果) 1직만을 할당하고 그 녹을 돌아가면서 타도록 하여, 의서습독관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³⁰⁾ 아마도 당시 조선 조정의 경제 사정이 '학습을 주요 직무로 하는 관직'에 대해 충분한 급여를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국대전』에 규정한 전의감 관원의 정원이 21원이고 내의원 관원의 정원이 12원이었음³¹⁾으로 볼 때 30원의 습독관 정원은 적지 않은 수이며 30원 정원의 수는 19세기까지 공식적으로 유지되었다. 고려를 비롯한 이전 왕조에 없던 의사 제도를 새로 설

17) 성호준. 「유의의 개념정립과 장개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20(1):128.
 18) 李经纬, 林昭庚. 『中国医学通史(古代卷)』. 北京:人民卫生出版社. 2000:321.
 19) 성호준. 「유의의 개념정립과 장개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20(1):128.
 20)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3, 禮典 生徒條.
 21)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勵條.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習讀官及教授內生員進士, 以其仕日數, 准園點之數, 許赴文科館試.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西班隨闕敘用.”
 2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端宗實錄』 卷13, 3年 正月 辛未條. “世宗軫念, 令三司之外, 別立醫書習讀之法, 俾讀方書 敦加獎勵, 如李孝信、全循義、金智輩稍得其術.”
 2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端宗實錄』 卷12, 2年 8月 辛丑條. “今醫書習讀人, 無勸懲之方, 故不勤其業, 請於前額九人, 加設六人.”
 2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卷27, 8年 2月 己卯條. “習讀人數少, 請以三十人爲定額, 三館及生員進士內, 年二十五歲以下聰敏者, 議政府、吏曹、禮曹、典醫提調等共擇定…(中略)…習讀人等每月季, 考療病及誤用藥材多少, 禮曹堂上、典醫提調、承旨, 共磨勘啓達陞黜.”
 25)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1, 吏典 典醫監條.
 26)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勵條.
 27)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4, 兵典 番次都目 習讀官條.
 28) 김성수. 「조선시대 의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역사 속의 의사들』. 서울:역사공간. 2015:76.
 29) 신동원. 「조선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2004;26(2):212.
 30) 국사편찬위원회. (2018)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六典條例』 卷6, 禮典 典醫監條. 【典醫監】…(中略)…副司果一窠(習讀官三十員, 每年四等, 輪回付祿.)
 31)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1, 吏典 內醫院條.

립하여 400년 이상 공식적으로 유지하였던 것은 조선 조정에서 그 제도의 효과와 용도를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서습독관 제도는 일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교육하는 의학생도는 중앙의 전의감과 혜민서에 각각 50명, 30명과 지방의 부와 대도호부, 목에 456명, 도호부에 528명, 군과 현에 2156명으로 중앙에는 총 80명, 지방에는 총 3140명이 있었다.³²⁾ 그러므로 의서습독관 제도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 교육제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신분이 정식관리는 아니지만 관원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녹을 지급하기 위해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거나 일이 있을 때만 해당 관청에 가서 실무를 수행하면 되는 임시직[遞兒]을 겸하여 주고, 의서 학습 시험성적이나 근무 일수를 점수화하여 임시직의 품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의서습독관 본직의 직무수행을 관리하였다. 흔히 의서습독관을 본직으로 두고 녹봉지급을 위해 무반의 임시직을 겸하여 주었는데, 전의감의 습독관은 종9품에서 종7품까지의 임시직을 받을 수 있었다.³³⁾ 만약 공부 성과가 뛰어나서 정식관리직[顯官]에 제수되더라도 본직을 반드시 겸하도록 해서 의학교육 성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학업을 마치면 동서반직에 빈자리가 나는 대로 서용한다는 규정도 있었다.³⁴⁾ 이때에 제수되는 정식관리직이나 서용되는 동서반직이 아마도 의학과 관련 없는 관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의학 공부를 성취한 데 대한 보상과 권장 차원에서 정식관리직을 제수하여 품계와 녹봉을 올려주지만 의서습독관으로 의학을 학습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발휘되어야 하므로 의서습독관으로서의 “본직에 겸하여 임명한다[兼差本職].”는 규정을 특별히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의서습독관에 대하여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수행해야 하는 본직, 즉 ‘평생 의무직’의 성격을 띠도록 한다. 이때 정식관리직이나 동서반의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 수행해야 하는 의서습독관 본직의 직무란 의서의 학습이 아니라 의서의 학습을 마치고 의학 전문가로서 능력 발휘를 해야 할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의학 전문가로서 능력 발휘를 해야

하는 의서습독관으로서의 평생 의무는, 의서습독 후 관시에 응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문과 대과에 합격해서 문관 고위직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서습독관의 직무 범위는 하급 의서습독관으로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무반의 중급·고급 관리가 되어 의학전문가로서 능력 발휘를 하는 여러 일들에게까지 사실상 확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서습독관 직무 범위의 이러한 면을 알고 조선의 의학 역사를 다시 보면 의관 직에 있지 않으면서 의서편찬, 의학행정 관장, 의학제도 입안, 의학교육 등에 참여한 적지 않은 인물들이 혹 과거에 의서습독관으로 교육받았던 것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실록 기사에서는 이효신(李孝信), 전순의(全循義), 김지(金智), 김의강(金義剛), 박맹달(朴孟達), 한계희(韓繼禧), 권찬(權攢) 등이 의서습독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전순의는 임원준과 함께 한 진료 및 의학교육에 관한 기사가 있고, 권찬은 의관으로서 당상관에 오른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의서습독관을 거쳐 주로 의관 직을 정식관리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찬(權攢, 1430~1487)은 성종 14년(1483)에 공조판서로 제수되었는데, 이때 의관으로서 종3품 이상의 당상관을 제수 받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론이 있었으나 권찬이 문신 의서습독관 출신이기에 가하다고 하여 마침내 공조판서에 올릴 수 있었다.³⁵⁾ 임원준 역시 권찬과 마찬가지로 의서습독관을 거쳐 공조와 예조의 관서에 올랐던 인물인데, 권찬과 다른 점은 문과 대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일반 문관과 다른 점은 이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동시에 『의약론』을 주해하고 국왕과 왕세자를 진료하고 의학교육을 위해 부모님 상을 다 마치고도 전에 관직 복귀를 명받는 등 의학 전문가로서만 가능한 사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임원준의 사적을 살펴보는 것은 의서 습독 후 의학전문가로서의 의서습독관의 직무 범위를 알아보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또한 조선 전기에 새롭게 마련한 의서습독관 제도가 조선의 의학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추리해볼 대표적인 실례로 삼을 수 있다.

32)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3, 禮典 生徒條.

33)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4, 兵典 番次都目 習讀官條. 【習讀官】 訓練院, 司譯院, 觀象監, 典醫監, 都目 兩(正月 七月) 遞兒 從六品一(司譯院.) 從七品四(一訓練院, 一司譯院, 一觀象監, 一典醫監.) 從八品九(三訓練院, 二司譯院, 一觀象監, 三典醫監.) 從九品十四(四訓練院, 五司譯院, 一觀象監, 四典醫監.) 加階 仕滿九百(七品以下, 四百五十.)”

34)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卷3, 禮典 獎勸條. “○醫書習讀官, 所讀諸書, 錄日課, 本曹同提調考講, 能通諸書者, 啓授顯官, 兼差本職, 其懶慢者, 隨其輕重罪之.” “成才人屬散者, 常仕本廳, 考褒貶, 東西班隨闕敘用.”

3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14年 7月 癸巳條.

2. 진료

실록에는 총 17회에 걸쳐 임원준의 진료 관련 사적이 보인다.

첫 번째 기록은 세조 1년(1455) 공신들의 연회에서 신숙주가 전순의, 임원준을 가리켜 명의로 이름났다고 일컬은 것이다.³⁶⁾ 특별히 의약에 관한 일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이계전과의 대화 중에 “전순의, 임원준 같은 명의를 와도 낫게 하지 못한다.”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임원준이 당시 명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만큼 진료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록은 세조 3년(1457) 8월 2일 강맹경, 신숙주, 한명회, 조석문, 한계미, 한계희와 내의(內醫)와 함께 임원준이 세자의 복약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이때부터 세자에게 매번 약을 진어할 때마다 강맹경 등이 모두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였다.³⁷⁾ 임원준은 한 해 전인 세조 2년(1456) 식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세자를 진료할 당시에는 사헌부 정사품 장령(掌令)의 신분이었다. 강맹경, 신숙주, 한명회, 조석문, 한계미가 우의정, 좌찬성, 도승지, 좌승지, 좌부승지의 신분으로 의학에 관한 소양이 있는 고위 관원으로서 세자의 약을 상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반면 직제학 한계희와 장령 임원준은 실제적인 의료능력으로 인하여 세자의 약을 상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기록은 세조 3년(1457) 8월 9일 세자의 병을 간호한 대신과 관원, 군사 등에게 1자급을 더하고, 임원준은 초자(超資)하라고 명한 것이다.³⁸⁾ 초자는 관리의 자품을 올릴 때 차례와 등급에 구애하지 않고 그 자급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다른 관원들은 모두 1자급씩 가져하였으나 임원준만 특별히 초자하라는 명이 있는 것은 세자의 진료에 임원준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본 것이다. 역시 의사로서의 실제 진료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기사이다.

세조 6년(1460) 12월 16일에는 영웅대군 이염의 병환이 심함에 이증과 임원준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고 의원 김길호가 부지런히 병을 간병하지 않은 죄를 국문하게 하였다.³⁹⁾

이는 처음에 의원 김길호가 영웅대군을 진료하였으나 낫지 못하고 병이 심해지자 임원준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역시 현직 의원보다 임원준의 의술이 뛰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서습득관 본직의 직무 범위에 전의감의 의관과 동일하게 종친의 질병 치료가 포함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세조 7년(1461) 4월 17일에는 조정 관원이었던 강맹경이 사망하자 전순의, 임원준, 김유지, 백귀린 등이 용약에 정성을 들이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의금부에서 국문하게 하였다.⁴⁰⁾ 임원준이 조정 관원의 질병을 치료할 의무가 있었으며, 치료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의금부에서 그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조 9년(1463) 7월 25일 임금이 편치 못하니 임원준, 전순의 등이 입시하였다.⁴¹⁾ 전순의가 임원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임원준의 이름에 앞에 거론되고 있다. 임원준이 임금의 병을 돌보는 제1 어의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조 9년(1463) 9월 11일 왕세자의 병환에 호조참판 임원준이 왕명을 받고 약을 의논한 뒤에 아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승정원으로 하여금 추국하려다 용서하였다.⁴²⁾ 호조참판은 의학과 관련이 없는 직책이지만 의서습득관을 본직으로 하는 임원준은 현재의 직책과 상관없이 왕과 왕세자 병환 시에 명을 받아 진료하였고, 진찰 및 처방 소견을 왕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약을 의논하라[議藥]’는 것은 임원준의 단독진료가 아니라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라는 것으로 보이며,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당한 것은 임원준이 의료진 중에서도 왕세자 진단 소견을 왕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세조 10년(1464) 3월 13일 행 상호군 홍일동이 선위례를 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당시 임원준을 보내어 구급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온몸이 푸르러 살릴 수가 없었다.⁴³⁾ 임원준이 조정 관원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술을 가졌다고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힘든 상황이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인지 살리지 못한 데 대한 국문이나 처벌이 없었다.

세조 12년(1466) 9월 28일 임금이 병든 지 며칠이 되고,

3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2卷 1年 8月 己未條.
 3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8卷 3年 8月 癸巳條.
 3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8卷 3年 8月 庚子條.
 3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22卷 6年 12月 戊子條.
 4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24卷 7年 4月 丁亥條.
 4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0卷 9年 7月 壬子條.
 4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1卷 9年 9月 丁卯條.
 4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2卷 10年 3月 丙寅條.

증상이 심해지자 밤 5고에 한계희, 임원준, 김상진을 불러 췌내에서 시중들게 하였다. 새벽에 다른 전각으로 옮긴 후 김상진 등이 탕약을 올렸으나 병환이 위급하였다. 중궁에서 명하여 공작기도재를 내불당에서 올리고, 한계희 등에게 임금의 병환이 위급함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나, 혹 유고 시를 대비하여 대신들에게 알려야 함을 말하였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중묘·사직과 명산·대천, 사찰에 기도하고 죄인을 방면하였다.⁴⁴⁾ 임원준은 당시 의관의 직책이 아니었으나 임금의 병환이 위중할 때 명을 받고 치료하는 어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병환의 정도에 따라 사망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의 판단도 하고 있다.

세조 12년(1466) 10월 2일 임금이 한계희, 임원준, 김상진을 불러 말하길, 꿈에 현호색을 먹으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복용하니 흥복의 증상이 조금 감소했다고 하고 현호색이 어떠한 약인가 물어보았다. 이에 흥복통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답하고, 현호색을 가미한 칠기탕(七氣湯)을 올리니 과연 병이 나았다.⁴⁵⁾ 칠기탕은 사람의 정서가 울체되어 명치 아래와 배가 쥐어짜듯 아픈 것을 치료하는 반하, 인삼, 육계, 구감초, 생강으로 구성된 처방이다.⁴⁶⁾ 임원준 등이 세조를 치료할 때 사용한 처방과 가미한 약재가 실록 기사에 상세히 나와 있다.

세조 12년(1466) 10월 5일 임금의 병시중을 든 한계희, 노사신, 강희맹, 임원준, 김상진 등의 자제에게 가자하여 서용하도록 하였다.⁴⁷⁾ 세조 12년(1466) 10월 6일 임금이 내탕의 서대 3개를 내어오게 하여 한계희, 노사신, 강희맹, 임원준에게 대령도의 노름을 하여 내기하게 한 후 모두 품계를 더하고 서대를 띠도록 명하였다. 임원준에게는 특별히 승정대부가 아직 안 되었으나 곧 될 것이니 서대를 띠라고 하였는데, 아래에 4인 중에 임원준이 의방에 가장 정통했고 한계희가 다음이라는 사관의 평이 달려있다.⁴⁸⁾ 세조 12년(1466) 10월 6일 임원준을 정헌대부 행 증추부동지사로 제수하였다. 한계희는 승정대부 행 이조판서가 되었다.⁴⁹⁾ 이

날 승정대부에 10인, 당상관에 6인이 제수되었는데, 세조의 질환 치료에 수고한 공로를 치하한 것이었다. 세조는 임금의 병을 치료한 관원들에게 자제를 가자하여 사용하는 외에 특별히 자신들의 품계를 올려주고 대령도의 노름을 한 후 서대를 띠게 하는 유희의 자리를 마련하여 치하해주었다. 사관의 평으로 보아 임원준의 의학지식이 뛰어났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조의 치병에 상당히 공헌했음을 알 수 있다.

예종 1년(1469) 11월 26일 임금의 병환에 서평군 한계희와 좌참찬 임원준이 여명에 입궐하여 진료하였다.⁵⁰⁾

성종 7년(1476) 12월 6일 왕이 한계희, 임원준, 조지경 등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이고 진료를 받았다. 당시 임원준은 경연지사(經筵知事)였기 때문에 성종이 임원준은 스승인데 종기를 보일 수 있는지를 승정원에 물어보았다.⁵¹⁾ 경연에서 왕과 문답하는 스승의 위치에 있었어도 현직에 상관없이 역시 의서습득관 본직의 직분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9년(1478) 12월 12일 당시 임원준은 탄핵을 당하여 파직되었으나, 약을 지어 대비의 병을 낫게 한 공로로 다시 서용되었고 함께 시료한 권찬, 조진, 문중선은 각각 1차급씩 올려받았다. 이 때 사관이 논평하기를, 세종 조의 노중례와 세조 조의 전순의, 김상진이 모두 명의였으며 벼슬이 높이 오르지 못하였으나 권찬은 의관으로서 당상관에 올라 크게 현달하였다고 하였다.⁵²⁾ 12월 13일 대사헌 이극기 등이 권찬의 작록이 지나치고 임원준의 서용이 부당하다고 아뢰니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⁵³⁾ 임원준이 파직당한 상황이었으나 권찬과 함께 인수대비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다시 서용되었다. 권찬이 의서습득관 출신 의관으로 현직에 있었지만 왕실에서는 임원준의 의사로서의 치료 능력을 여전히 필요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3년(1482) 1월 27일 임금이 임원준을 불러 대왕 대비의 병환에 권찬과 상의하여 약을 올리도록 하였다.⁵⁴⁾

성종 14년(1483) 2월 15일 온양온천에 가 있는 두 대비의

4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9卷 12年 9月 丙申條.
4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0月 庚子條.
46) 허준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신증보대역 東醫寶鑑』. 서울:법인문화사. 2012:252. 1卷 內景篇 氣門.
4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0月 癸卯條.
4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0月 甲辰條. “四人中元濬最精通醫方, 繼禧次之.”
4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0月 甲辰條.
5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睿宗實錄』 8卷 1年 11月 丙午條.
5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74卷 7年 12月 乙亥條.
5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99卷 9年 12月 己亥條.
5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99卷 9年 12月 庚子條.
5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137卷 13年 1月 丙申條.

시탕을 수행한 정승 및 임원준, 가승지 등이 의논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병중에 목욕이 맞지 않으면 목욕을 말리라고도 명하였다.⁵⁵⁾ 임원준이 권찬과 함께 대왕대비의 병을 진료하도록 왕명을 받고, 대왕대비와 대비의 온천 행을 수행하여 시탕하거나 병중에 따른 목욕의 가부를 정하는 권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6년(1485) 1월 22일 임금이 여러 가지 증상을 한번에 다스릴 수 있는 약의 제약을 서하군 임원준과 공조판서 권찬에게 명하였다.⁵⁶⁾ 성종이 여러 가지 증상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착상을 하고 그 제약을 임원준과 권찬에게 명하고 있다. 함께 써서는 안 되는 약이 있으므로 약의 배합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제약을 의뢰한 것이었다.

성종 19년(1488) 11월 19일 대비의 건강을 돌본 공으로 임원준의 1자급을 더하고 적장의 서용을 명하였다.⁵⁷⁾ 임원준은 승록대부가 되고 서용된 적장자는 바로 임사홍이다. 대사헌 이척 등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성종은 인수대비의 강녕함에 임원준의 공이 큼을 들어 이척 등의 반대를 수용하지 않았다.⁵⁸⁾ 승록대부가 극품이며 한계회, 서거정 등이 오를만한데도 오르지 못한 것을 임원준에게 가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성종이 인수대비의 건강에 대한 임원준의 공을 매우 크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성종 19년(1488) 12월 21일 성종이 형님을 잃자 상심하여 병환을 얻고 이에 임원준과 내의원 제조 등이 문안하고 슬픔을 절제하라 아뢰다.⁵⁹⁾ 성종 25년(1494) 12월 20일 임금이 배꼽 아래에 적이 작은 괴를 이루어 아프고 색이 붉은 증상에 대해 임원준, 노사신, 이세좌를 불러 묻게 하였다. 이에 같은 증상을 앓은 적이 있는 이세좌가 기와를 구워 환부에 문질렀다는 대답을 올렸다.⁶⁰⁾

임원준의 의료 관련 사적은 총 17회로 세조 시 왕세자(의경세자 덕종), 영응대군 이엄, 강맹경, 세조, 왕세자(예종), 홍일동, 예종, 성종, 대왕대비(정희왕후 윤씨), 대비(인수대비 소혜왕후 한씨), 성종을 진료하였다. 국왕과 왕세자, 대비, 대왕대비를 비롯하여 종친인 대군, 조정 관원의 질병을 치료하고 특히 대왕대비와 대비의 경우 온양행궁까지 수행하여 진료하였다. 진료 시 주로 방약을 사용하였으며 의방에 뛰어났다는 사관의 평가가 있었다. 성종 조에는 국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의 제약을 명받기도 하였다. 세조의 위중한 병을 치료하였을 때는 관직을 제수받고 그 아들인 임사홍이 관직에 서용되었다. 성종 조에서 인수대비의 병을 치료했을 때는 자신이 파직되었다가 다시 서용되거나 그 아들 임사홍이 파직되었다가 서용되고, 임원준 자신은 승록대부의 작위를 받았다. 당시 많은 관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도 성종은 인수대비에 대한 효를 명분으로 삼아 그 뜻을 거두지 않았다.

임원준은 문과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 문관이었지만 의서습득관으로서의 본직을 이행하여 국왕과 대비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능력으로 공을 이루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파직 상태에서 다시 서용되거나 벼슬을 높이 올려 받았고, 그 아들 임사홍에게까지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이 미치게 된다. 공은 의료의 능력으로 세우고 벼슬은 문관으로서의 품계를 더하여 받은 것인데 이러한 점이 성종 조 사화를 거쳐 중앙에 진출한 사람과 문신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임원준의 입장에서는 의서습득관 본직 수행 과정에서 다른 문신들이 가지지 못한 의료 능력으로 왕과 대비 등을 진료하여 공을 세울 수 있는 유리한 점을 심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5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151卷 14年 2月 戊寅條.

5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151卷 14年 2月 戊寅條.

5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22卷 19年 11月 甲戌條.

5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22卷 19年 11月 癸未條. “傳曰：爾等以予之不聽爲缺望，予爲大妃之康寧而元潛功大，故推賞士洪耳。爾等言之不已，予亦悶焉。”

5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23卷 19年 12月 庚戌條.

6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97卷 25年 12月 乙亥條.

표 3. 임원준의 진료 사적

시기	대상	문제	관계인	처리
세조 1년(1455)	임원준, 전순의		신숙주	명의로 거명됨
세조 3년(1457)	의경세자(덕종)	병환	강맹경, 신숙주, 한명회, 조석문, 한계미, 한계희, 내의	복약 상의, 약 처방 치료
세조 6년(1460)	영응대군 이염	심한 병환, 의원 김길호가 치료 못함	이증	파견 진료
세조 7년(1461)	강맹경(조정관원)	질병, 사망	전순의, 김유지, 백귀린	용약진료
세조 9년(1463)	세조	편치 못함	전순의	진료
세조 9년(1463)	세자(예종)	질병		복약 상의, 결과 보고
세조 10년(1464)	홍일동(조정관원)	사신 접대 공무 수행 중 과음으로 응급상황 발생, 사망		파견 응급진료
세조 12년(1466)	세조	병세가중	한계희, 김상진	야간입결진료, 약 처방, 유고 시에 대한 상황판단 및 대비
세조 12년(1466)	세조	현호색의 약효 문의	한계희, 김상진	현호색 약효 설명, 현호색가칠기탕 처방으로 치료
예종 1년(1469)	예종	편치 못함	전순의	진료
성종 7년(1476)	성종	종기	한계희, 조지경	경연지사로 스승인데도 진료
성종 9년(1478)	인수대비 (소혜왕후 한씨)	병환	권찬, 조진, 문중선	탕약처방 치료
성종 13년(1482)	대왕대비 (정혜왕후 윤씨)	병환	권찬	복약 상의, 약 처방 진료
성종 14년(1482)	대왕대비 등 (정혜왕후 윤씨)	운양행궁 요양	수행정승, 가승지	복약 상의 및 처방, 온천욕가부 판단
성종 19년(1485)	인수대비 (소혜왕후 한씨)	병환		건강 회복
성종 19년(1488)	성종	형님 상 상심	내의원 제조	슬픔을 절제하도록 문안
성종 25년(1494)	성종	배꼽아래 적괴통, 발적	노사신, 이세좌	진찰, 치료경험 소개

3. 의학교육 및 정책입안과 인사행정

1) 의학분야 정책입안

단종 즉위년(1452) 5월 25일 행 부사정 임원준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올렸다. 첫째, 문신으로 의학을 교육하게 하되 영민한 무리를 뽑아서 방서와 경문을 읽게 하고, 내의(內醫)에게도 방서와 경문을 읽게 한 후 사맹월에 시험하도록 할 것. 둘째, 여러 도의 좌우 계수관에 의국을 설치하여 약을 제조하여 팔게 할 것. 셋째, 향약을 많이 쓸 것. 넷째, 침구전문법을 재건하여 침과 약을 병용할 것.⁶¹⁾ 당시 임원준은 세종 26년(1444) 과거시험에서 신윤재·신윤보·윤흥은·백효건·박효달·윤백은·조벽·이계행·정충원·신자수

등과 답안을 서로 대신 써 주다가 발각되어 과거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⁶²⁾ 세종 29년(1447) 두 차례에 걸쳐 임원준이 과거시험 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상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⁶³⁾⁶⁴⁾ 세종 29년(1447) 의서찬집관으로 부사정 직에 있던 임원준이 벼슬을 1차급 더해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도승지 황수신이 임원준을 무반직이 아닌 동반의 수7품직으로 옮긴 것이 사헌부에 적발되어 황수신과 임원준이 해임되었다.⁶⁵⁾ 이후 임원준은 문중에 의해 다시 서용되어,⁶⁶⁾ 단종 즉위년(1452)에 행 부사정으로서 의학을 권장하는 정책을 입안하였던 것이다. 1447년 과거시험 자격회복 상서와 동반직 이동으로 인한 사헌부 적발 기사에 임원준의 직급이 종7품의 부사정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의서찬집관'의 관직명도 보인다. 의서찬집관은 세종

6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端宗實錄』 1卷 1年 5月 丁巳條.
 6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宗實錄』 104卷 26年 4月 甲申條.
 6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宗實錄』 117卷 29年 8月 丙寅條.
 6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宗實錄』 117卷 29年 8月 己巳條.
 6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宗實錄』 117卷 29年 9月 丙申條.
 6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文宗實錄』 2卷 1年 7月 辛酉條.

조에만 있던 의서습득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던 임시 관직명이거나, 혹은 의서습득관에 대한 세종 조의 공식명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서습득법의 초기 시행단계에 의서습득관과 의서찬집관을 구별하여 별도로 두었거나 의서를 습득하는 관직명을 그 목적에 의거하여 ‘의서찬집관’으로 했을 수 있다. 어쨌든 문종에 의해 재임용된 임원준은 단종이 즉위하자 그 자신과 같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의서습득법이 보다 잘 시행되기 위한 법안과 아울러 의학 전반에 걸친 발전정책을 입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의 동기는 의서습득법에 의해 의학을 교육받은 자로서 ‘의료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됨과 아울러 의학 분야 발전을 견인할 직무의 자각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의학 분야 발전정책 입안이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명실상부한 문관이 된 시기에는 보이지 않고,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며 다만 의서찬집관으로 무반 임시직 녹봉을 받고 있을 때에만 그치고 있다. 조선의 의서습득관 권징규정은 문반직의 현직관리직 체수 또는 문과 대과에 응시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그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지만, 임원준의 사적을 보면, 그가 아직 정식 문관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적극적인 의학 정책 입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종 8년(1477) 7월 17일 좌참찬 임원준, 예조판서 허종 등이 의관, 역관 등의 대전조회 참석에 대하여 이미 벼슬을 받았고 나라 운영에 없을 수 없는 분야이니 이전과 같이 동서반에 함께 배열하도록 하자고 의논하였다.

의역(醫譯)·음양(陰陽)·산률(算律)과 같은 것은 모두 한결같은 무리이니, 사대부와 더불어 치열(齒列)하게 함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미 왕작(王爵)을 받았으니, 구별할 수 없거늘, 하물며 이 몇의 무리는 나라를 다스림에 모두 없을 수 없으니, 만약 구별하여서 배척하면, 이 기술을 하는 자는 권장할 것이 없어서 장차 폐업함에 이를 것이니, 그전대로 함이 편하겠습니니다.⁶⁷⁾

문무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회에 함께 서지 않음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당시 의학을 비롯한 잡학관들을 얼마나 천시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원

준은 세종과 세조 조를 거치면서 나라에서 의학을 비롯한 기술학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역사를 알고 있었으며, 바로 자신이 그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으로서 직접 의학을 권장하는 정책 입안을 한 적도 있었지만 기술학을 대우해야 하는 당위성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2) 의학교육

조선 전기 의학교육은 의학을 본업으로 하는 의생 및 의서습득관에 대한 교육과 국왕, 왕세자, 조정 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학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의학의 후진 양성으로서의 교육만 논하고 국왕, 왕세자, 조정 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학 강독은 다음 장에 기술하였다.

단종 3년(1455) 1월 25일 전의감 제조가 의약에 관한 제안을 올리는 중 세종의 의서습득법에 의해 이효신, 전순의, 김지 등이 의학 방술을 약간 체득하였다는 것과 함께 임원준이 이미 의서에 정통하였으니 집현전 관원과 함께 늘 의학을 교육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 의서습득관은 삼의사 의원과 구분하여 성균관 유학생도의 월강례와 동일하게 매월 한 번 고강할 것과, 삼의사 각 품에 결원이 있으면 의서습득관으로 전보하고 의업이 특이하게 뛰어난 자가 있으면 동반 좋은 벼슬에 특차할 것을 건의하였다.⁶⁸⁾ 이 기사에서 임원준은 이미 의학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특별히 언급되고 있다. 의서습득법에 의해 방술을 약간 체득했다고 언급된 전순의는 임원준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세조 5년(1459) 10월 21일 세조는 당시 과거에 합격하여 예문관 직제학이던 임원준을 부모의 3년 상을 마치기 전에 관직에 복귀시켰다.⁶⁹⁾ 10월 24일 그 까닭을 전순의가 늙고 병들어 의생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하고,⁷⁰⁾ 11월 12일 고기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라고 특별히 불러 전교하기까지 하였다.⁷¹⁾ 따라서 1459년 10월부터 전순의의 후임으로 임원준이 본격적으로 의학을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 10년(1464) 7월 27일 형조참관 임원준, 동지중추원사 양성지에게 명하여 여러 학문을 천문문(天文門), 풍수문(風水門), 율려문(律呂門), 의학문(醫學門), 음양문(陰陽門), 사학문(史學門), 시학문(詩學門)으로 나누고 여기에 각 6인

6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82卷 8年 7月 壬午條.
 6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端宗實錄』 13卷 3年 1月 辛未條.
 6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8卷 5年 10月 己巳條.
 7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8卷 5年 10月 壬申條.
 7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8卷 5年 11月 庚寅條.

을 두고 어린 문신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의학문에는 이수남, 손소, 이길보, 김의강, 이익배, 유문통의 6인을 두었다.⁷²⁾ 이 기사는 세조가 천문, 풍수, 의학, 음양의 소위 잡학으로 분류되는 학문을 사학, 시학과 나란히 두고 각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에게 어린 문신들을 배정하여 교육하려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임원준은 세조의 명을 받아 각 분야의 전문가 각 6인씩을 선정하고 있다. 의학 교육의 행정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종 9년(1478) 1월 12일 승지와 정창손, 한명회, 윤사흔, 임원준, 박성손 등이 권찬은 의술이 정밀하니 3년 상을 마치기 전에 원래 관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좋다고 아뢰나, 윤필상 등이 권찬 같은 무리는 많으므로 하문할 일이 있을 때 명하여 불러들이면 된다고 하니 왕은 윤필상 등의 의견을 따랐다.⁷³⁾ 세조 5년 임원준이 상중이었을 때는 왕이 의학 교육을 할 사람이 없음을 들어 3년 상을 마치기 전에 관직에 복귀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하였으나 성종 조에 들어와서는 권찬의 상중 복귀가 기각되었다. 그 이유를 권찬과 같은 무리가 많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시 권찬의 일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 후반에는 의서습독관 제도로 형성된 인재풀이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 같다.

성종 9년(1478) 4월 29일 임원준, 임사홍의 소인행에 대해 심원 및 전에 정승을 지낸 자, 의정부와 육조참판, 대간 등이 명을 받고 인정전 앞에 모여 면질하여 논하였다. 부제학 유진의 진술 내용 중 임원준이 그 아들 임사홍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의서습독 시에 안평대군 용의 집에서 약재를 훔쳤으니 간사하고 탐탁하다는 구절이 있다.⁷⁴⁾ 당시 임원준과 임사홍이 소인임을 들어 탄핵하면서 그 증거로 내세우는 임원준의 오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안평대군 집 약재 도난은 과거장에서의 대리시험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었다. 과거 대리시험은 사실이나, 안평대군 집 약재 도난은 당시 수양대군에게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안평대군의 모함이었던 것으로 일찍이 판명되었고, 이러한 맥락으로 세조 즉위 후 임원준은 원종공신 1등의 녹을 받았

다.⁷⁵⁾⁷⁶⁾ 이어서 성종 9년(1478) 6월 15일 임원준이 상소 내용 중에 의서습독관으로 관직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자술하고 있다. 성종 조에 세력을 잡게 된 사람들에게는 임원준이 의학 치료 능력으로 작위를 높여 받는 것이 문제시되었고 그것은 ‘의술로 관직을 받았다’는 빌미로 명제화 되었다. 이에 임원준은 세종의 명으로 의서습독관이 되면서부터 의학을 익혔음을 밝히고 있다. 성종이 이러한 내용이 적힌 임원준의 상소 전문을 승정원에 내린 것은 임원준을 신원해주고자 한 뜻이 있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준의 상소를 승정원에 내리니, 그 상소에 “그들이 신에게, ‘잡술을 한다.’함은, 세종께서 말년에 병을 얻어, 신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 함을 잘못 들으시고, 내의 원에 벼슬하기를 명하여 의서를 습득하게 하였으니, 신의 의학은 또한 세종의 명입니다. 더구나 고금의 문학하는 재상은 다만 그 글만을 강설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약재를 제조하여 인명을 구제하는 것으로 힘쓰는 한두 사람이 아니니, 홍문관에서 의학을 가지고 잡술이라 하면서 신을 헐뜯는 것은, 신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하였다.⁷⁷⁾

이로써 임원준이 세조 2년(1456) 과거에 급제하여 문관으로서의 본격적인 관직에 나가기 전에 세종에게 발탁되어 의서습독관으로 먼저 관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서습독관이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전의감이 아닌 내의원에 속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년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 29년(1447) 과거 응시자격 회복을 청하는 상소 및 도승지 황수신의 동반직 임의제수에 대한 기사에 ‘부사정 의서찬집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임원준이 세종에 의해 의서습독관으로 발탁된 것은 적어도 1447년 그의 나이 25세 이전임이 확실하다. 따라서 의서습독관 제도가 적어도 세종 29년(1447)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공인할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친 과거 응시자격 회복을 청하는 임원준의 상소에 세종은 모두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임원준이 의학

7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3卷 10年 7月 戊寅條.

7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88卷 9年 1月 乙亥條.

7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91卷 9年 4月 庚申條. “元濬則常時不教誨其子, 又甲子年以場屋代述定擣砧之, 後醫書習讀時, 竊藥於塔家而逃, 以故謂之奸邪貪濁.”

7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2卷 1年 12月 戊辰條.

7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92卷 9年 14年 5月 壬戌條.

7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93卷 9年 6月 乙巳條. “其曰 ‘治雜術’ 者, 世宗末年遭疾, 謬聞臣聰慧, 命仕內醫院, 習讀醫書, 則臣之學醫, 亦世宗之命也. 況古今文學宰相, 非徒講說其書, 親劑藥材, 以救人爲務者非一, 則弘文館以醫爲雜術而毀臣, 臣實未解.”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다. 임원준이 세종의 명에 의해 의서습득관이 되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자술하는 이 기사는 임원준 개인 사적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의학사 전체로 볼 때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기사의 내용은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의원이거나 의관이 아니면서 의술을 펼치거나 의학 서적을 저술한 이른바 유의(儒醫)들이 온전히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의들 또한 조선의 국가 의학발전 정책에 의해 주의 깊게 길러졌음을 시사한다. 턱없이 부족한 전업의를 대신하여 부모, 형제, 처자의 질병을 돌보고,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연구했으며, 향약을 이용해 가벼운 증상을 손쉽게 치료하는 법을 책으로 엮었으며, 지방 교유(敎諭)를 도와 향촌민의 진료 및 향약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조선시대 유의들은 그 기원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길러낸 '의서습득관'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뿐 아니라 학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부합한다. 또 이러한 점은 자생적인 전업의 발생의 기원이 오래되었으며 그로 인한 자유로운 의학발전과 학술유과의 성립 같은 전통이 명대 이전에 일찌감치 확립된 중국의 의학과 조선의 의학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면이기도 하다.

3) 의학분야 인사 및 행정 관장

세조 10년(1464) 7월 6일 예조참판 김길통, 참의 심선, 형조참판 임원준이 생약포(生藥鋪) 별좌를 포폄한 계본에 이름을 쓰지 않고 아된 것에 대해 사헌부에서 치죄를 청하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⁷⁸⁾ 생약포는 조선조에 중국 약재를 수입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인데, 초엽에 설치되어 세조 때 전의감에 이관되었다. 전의감은 예조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조참판과 예조참의가 생약포 별좌의 인사고과를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형조참판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 임원준이 당시 형조참판이지만 의서습득관의 본직 수행으로 의약 관련 인사고과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듯하다.

성종 14년(1483) 1월 21일 사헌부 지평 김종이 전의감

제조 임원준이 출사한 날이 적은 정양효를 체아직의 감정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올바르게 않음을 고하였다. 사관의 평에 임원준이 오랫동안 의관, 역관을 거느리면서 북경에 가는 의관, 역관들에게 부탁하여 물화를 많이 무역하였으므로 의관, 역관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또 성종 19년(1488) 6월 29일 임원준을 승정대부 서하군(西河君)으로 삼았는데, 사관의 논평에 임원준이 오랫동안 사역원과 전의감의 제조로 있었는데, 의원이거나 통사가 중국에 가고자 하면 임원준에게 후한 뇌물을 바친 후에야 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무릇 체아직(遞兒職)은 그 시재(試才)의 분수(分數)와 출사한 날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천거하는 것이 예인데 임원준 등은 예를 어기고 함부로 추천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사정이 있는 것이다. 임원준은 오랫동안 의관·역관을 거느리면서 북경에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물화를 많이 무역하였으므로 의관·역관들이 몹시 괴롭게 여겼지만 오히려 그 독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을 채워주었으니 대관(臺官)의 탄핵이 어찌 뜻이 없었겠는가?” 하였다.⁷⁹⁾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원준은 오랫동안 사역원·전의감 양사(兩司)의 제조로 있었는데, 의원(醫員)·통사(通事)로서 중국에 가는 자는 반드시 임원준에게 중한 뇌물을 바친 후에야 갈 수 있었다.” 하였다.⁸⁰⁾

임원준이 전의감, 사역원의 제조를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사익을 도모하거나 인사고과에 공정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전의감의 제조가 된 것은 의서습득관으로서의 본직 수행 중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전의감의 제조는 실록 기사에서 보듯이 의학 관련 인사 및 행정을 통괄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집행해 갈 수 있는 사령탑에 해당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서습득관이라는 제도를 두어 의학 분야 전문가를 기르려 했던 목적이 임원준이 전의감의 제조가 됨으로써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준은 전의감 제조로서 조선의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누렸으나 의학 발전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학 교육을 강화하거나 혹은 의학 혜택을 지방으로 확장하는 등의 공적

7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3卷 10年 7月 丁巳條.

7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150卷 14年 甲寅條.

8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17卷 19年 6月 辛酉條.

직무수행보다 인사권 장악을 이용해 개인의 치부에 더욱 힘을 기울였던 것 같다. 조선의 의학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본인 위치의 역사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임원준의 사적 고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연산군 1년(1495) 9월 28일 사헌부 지평 유현이 전의감 제조 임원준이 늙고 병들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라는 건의를 올리니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⁸¹⁾ 1495년 임원준은 73세인데 당시까지 전의감의 제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종 13년(1518) 3월 10일 안당(安塘)이 문신으로서 전의감의 제조가 되어 의술을 익히지 않은 자신이 전의감 제조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임금에게 아뢰었다. 또한 김정이 당시 의학교육과 의서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아뢰었다. 두 사람은 성종 조의 허중, 한계희, 임원준이 의사(醫司) 제조로서 의학을 교육하였는데, 그 중 허중(許琮)이 가장 약을 쓰는 이치에 정통하고 교육에도 심력을 다했기에 당시 명의라고 일컬을만한 김순몽(金順蒙)·하종해(河宗海) 등이 모두 허중의 제자임을 들어, 전의감 제조는 의업에 정통하여 후진을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⁸²⁾ 중종반정 이후 의서습득관 출신이 삼의사의 제조를 역임하는 관례가 깨어지고 의학을 모르는 일반문신이 제조 직을 맡게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제조 직을 맡을 자격이 되는 의학을 아는 문관이 없었거나 또는 연산 조 시기의 사람 기용을 기피한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임원준은 의학 이외 기타 기술 잡학과 관련된 직무도 수행하였는데, 가장 많은 기록을 보이는 것은 음양오행설 및 풍수지리설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요절한 왕세자의 묘 자리를 선정하거나 왕궁의 출입문, 도로의 개통 및 폐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일이다. 세조 3년(1457) 9월 5일부터 10월 14일

까지 양주 대방동, 광주, 과천, 한강 남쪽 나루, 사평원, 현릉, 건원릉, 과천 청계산 기슭, 원평, 풍향, 교하, 고양현 봉현 등으로 상지(相地)하게 하였다.⁸³⁾⁸⁴⁾⁸⁵⁾⁸⁶⁾⁸⁷⁾⁸⁸⁾⁸⁹⁾⁹⁰⁾⁹¹⁾⁹²⁾⁹³⁾⁹⁴⁾ 당시 의경세자가 요절하자 갑자기 능 자리를 정해야 했는데 세조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곳을 두루 살펴 매우 세심하게 능 자리를 골랐고, 그 과정에서 임원준이 매번 후보지에 파견되어 자리를 살핀 후 보고하였다. 세조 10년(1464) 9월 2일 『병장설』의 주석을 산정하고 교정하게 하였다.⁹⁵⁾ 『병장설』은 무예에 관한 서적인데 임원준이 왕명으로 불필요한 주석을 없애고 교정하였다. 성종 18년(1487) 2월 3일 사역원 제조 임원준에게 요동에 가서 중국어를 익힐 문신을 몇 명 선발하는 것이 좋을지 하문하였다. 임원준이 전대의 예에 따라 2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⁹⁶⁾ 성종 23년(1492) 6월 7일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니, 사역원 제조 윤필상·임원준·이극중·김자정이 수행하였다. 임사홍(任士洪) 등 13인을 동·서로 나누어 짝이 되어 중국말로 서로 문답하기를 시켰다. 임사홍 등이 아직 익숙하지 못하자, 임원준이 1년에 1번씩 중국에 보내서 중국어에 익숙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⁹⁷⁾ 임원준이 사역원 제조를 맡아 중국어 교육 및 관련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무예 관련 서적을 교정하거나 풍수지리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왕실의 능지 선정에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등 의학 외 기술 잡학 분야에서도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원준은 세종 29년(1447) 그의 나이 25세 이전에 세종에게 의서습득관으로 발탁되어 의학을 공부하였고 단종 즉위년(1452) 30세에 의서습득관 행 부사정으로서 의학교육 강화와 침구전문법의 재건, 향약 사용 권장, 각 도 계수관 의국 설치와 제조약 판매 등 의학 발전 정책을 입안하였다. 단종 3년(1455) 전의감 제조에 의해 의학교육 적격자로 지

8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燕山君日記』 9卷 1年 9月 戊申條.
8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中宗實錄』 32卷 13年 3月 己酉條.
8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丙寅條.
8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丁卯條.
8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辛未條.
8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癸酉條.
8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癸酉條.
8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乙亥條.
8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丙子條.
9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丁丑條.
9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9月 戊寅條.
9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10月 壬寅條.
9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10月 癸卯條.
9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9卷 3年 10月 甲辰條.
9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4卷 10年 9月 壬子條.
9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00卷 18年 2月 癸酉條.
9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66卷 23年 6月 丙午條.

목된 데 이어 세조 5년(1459) 37세에 의학교육을 위해 상증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직에 복귀하였다. 당시는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직제학이었으나 의서습득관의 경우 과거에 급제하여도 본직을 겸하여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임원준이 실제로 의학 교육을 담당한 것은 이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의학 분야의 인사고과에 관여하거나 왕명을 받아 의학교육에 관한 행정을 수행하거나 의관, 역관의 신분 규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성종 14년(1483) 61세부터는 전의감의 제조로서 의관, 역관의 북경 파견에 사사roi 물건 수입을 종용하거나 인사권을 빌미로 뇌물을 받는 등 공적인 직무수행보다 사적인 치부에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전의감의 제조 직은 의학 관련 인사, 교육, 정책 입안과 집행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령탑으로 의서습득관을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한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임원준은 전의감 제조로 오래 재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서도 자신의 역사적 의의를 오히려 자각하지 못하여 의서습득관 제도가 조선 의학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4. 의서편찬 및 간행

세조 3년(1457) 4월 임원준은 세조의 명으로 이조참의 이극감(李克堪), 첨지중추 이에손(李禮孫)과 함께 세종 대에 편찬한 『창진집(瘡疹集)』을 보완, 교정, 주석, 편집하여 재발간하면서 서문을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창진집』은 세조 때 임원준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소개되었으나⁹⁸⁾ 임원준이 쓴 서문에 『창진집』 원서는 세종대왕이 내의(內醫)들로 하여금 여러 방에서 창진(瘡疹)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한 질의 책으로 만든 후 인쇄 반포하였으며, 이후 세조대왕이 원서의 미비하고 잘못된 것을 보충하고 바로잡고자 하여 새로 발간하였음을 밝혀 놓았다.⁹⁹⁾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창진집』을 임원준이 편찬한 것은 아니다. 원 편찬자는 세종 대의 내의들이고, 재발간 시에 임원준과 이극감이 재편집과 어려운 부분에 대한 주석 작업을 하고, 이에손이 원본 대조 교정을 맡았으며, 임원준이 서문을 썼다. 임원준이 세종 말년에 의서습득관이긴 하였으나 ‘내의’가 아니었고 만약 원서 편찬에 참여했다면 서문에 그 사실

을 밝혔을 것이므로, 임원준이 『창진집』 원서 편찬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두중이 『한국의학사』에서 “일본 율수당가장 의서목에 본서가 ‘조선 임원준 봉교찬’으로 되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부터 『창진집』이 세조 조에 임원준이 편찬한 의서로 굳어지게 된 것 같은데¹⁰⁰⁾, 임원준 자신의 서문 내용에 따라 처음 편찬 시기와 원 편찬자를 올바르게 알아주어야 할 것이다. 서문 첫머리에 창진의 병리적 특징과 다발연령, 강력한 전염성 및 치명성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어서 원 편찬자와 재발간의 경위, 유학적으로 해석한 의학의 근본정신과 원류, 발주자인 세조대왕에 대한 찬탄 순으로 의서의 서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매끄러운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끝에 서문 작성 연월일과 임원준 자신의 관직을 ‘산대부수직 예문관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이라 기록하고 있다.¹⁰¹⁾ 당시 임원준은 35세였다. 안상우는 세종 조에 처음 편찬된 『창진집』을 세조 조에 와서 보완, 교정, 재편집하여 같은 이름으로 재발간하는 이러한 작업이 『의방유취』에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임원준을 『의방유취』의 중요한 교정 및 편찬자로 짐작하였다.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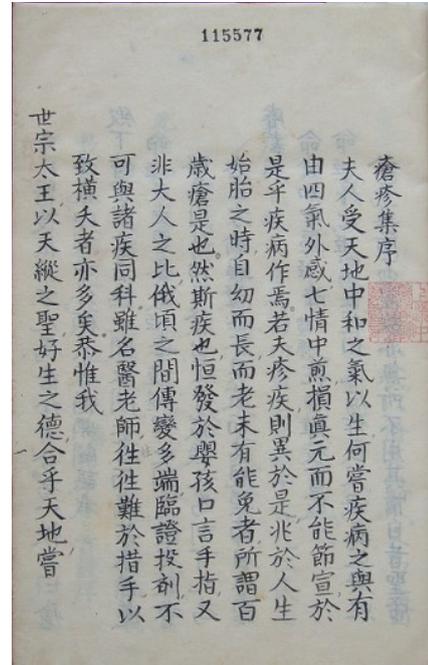


그림 1. 『창진집』 서문

98) 손흥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327.

99) 李佑成 編. 瘡疹集·太醫院先生案. 任元濬 校編. 『瘡疹集』. 서울:亞細亞文化社. 1997. 序.

100)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293.

101) 李佑成 編. 瘡疹集·太醫院先生案. 任元濬 校編. 『瘡疹集』. 서울:亞細亞文化社. 1997. 序.

102)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9, 21, 22, 23, 31, 60, 61.

세조 3년(1457) 11월 10일 해양대군 세자 책봉을 위해 한명회, 구치관을 명나라에 보낼 때 한명회의 종사관 임원준에게 ‘예문관에 없는 서적과 의방, 불서를 되도록 많이 구입해 오도록’명하였다.¹⁰³⁾ 임원준이 세조의 특별 명령으로 명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속하여 조선에 없는 의학 방서를 구입해 오는 일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세조 9년(1463) 11월 15일 동지중추원사 전순의, 호조 참판 임원준으로 하여금 의학을 시강하게 하고, 인쇄할 원고를 소리 내어 읽는 교서관의 인원을 불러 의서를 마감하게 하였다.¹⁰⁴⁾ 시강은 국왕 앞에서 주로 유학의 경서를 강독하는 것을 말하는데, 왕세자와 내중친, 정인지·정창손·영의정 신숙주·우의정 구치관·우참찬 최항·예조 판서 박원형·이조 판서 김담·이조 참판 홍응·병조 참판 김국광·대사헌 서거정 등이 국왕을 수행하여 전순의와 임원준이 진행하는 의학 강독에 참여하였다.¹⁰⁵⁾ 당시 전순의와 임원준이 어떠한 텍스트로 의학을 시강하였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왕과 왕세자 등 앞에서 구체적인 의방 보다는 의학의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황제내경』과 같은 의경을 강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조 9년(1463) 12월 27일 세조대왕이 친히 『의약론』을 지어 임원준에게 주해, 인쇄, 반포하게 하였다.¹⁰⁶⁾ 『의약론』은 세조대왕이 지은 의약에 관한 논문 성격의 의서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원서는 현존하지 않고, 관련 실록기사의 내용으로 그 논점을 짐작할 따름이다. 날짜로 보아 11월 15일 의학 시강 후 인쇄 원고를 소리 내어 읽고 마감하게 한 의서가 바로 『의약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창진집』의 재발간 때와는 달리 임원준 단독으로 주석과 해제를 더하고 인쇄, 반포까지 맡았다. 당시 임원준은 39세였는데, 그에 대한 세조의 신임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록기사에 수록된 부분은 급히 요약해서 쓴 탓인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다. 첫머리에는 병증의 한열 허실에 맞추어 환자의 기(氣)가 쇠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는 의약의 근본원리를 피력하고, 이어서 앞에서 언급한 근본원

리를 구현하는 경지에 오르지 못한 하급의 의사를 8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 중 첫 번째의 심의(心醫)와 두 번째의 식의(食醫)는 하급의 의사지만 나름대로의 취할 점이 있되, 그것도 지나치면 의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에는 무심의 의[無心之醫]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세조 대왕이 불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짐작케 하는 구절이다. 임원준이 부가했을 주석이나 해제를 현재로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성종 8년(1477) 5월 20일 서평군 한계희, 좌참찬 임원준, 행호군 권찬이 『의서유취(醫書類聚)』 30권을 인행하여 올리면서 3년 공정이 걸렸음을 아뢰고, 감인관 류서(柳潁)에게 정서관직(顯官)을 제수하고 전교서 별제 백수희(白受禧)에게 녹을 받기 위한 임시직(祿職)을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가하다고 하였다. 한계희 등에게는 호피 1장씩을 하사하였다.¹⁰⁷⁾ 이 기사는 지금까지 『의방유취(醫方類聚)』의 활자본 간행 완료를 기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종 5년(1474)부터 성종 8년(1477)까지 3년에 걸쳐 한계희, 임원준, 권찬이 『의방유취』를 교정하고 간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¹⁰⁸⁾¹⁰⁹⁾ 김두중은 이 기사의 『의서유취』에 대해 ‘서(書)’자는 ‘방(方)’을 잘못 베껴 쓴 것으로 짐작하여 역시 『의방유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¹¹⁰⁾ 그러나 실록에는 『의서유취』와 『의방유취』를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두 가지를 동일서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세조는 세조 5년(1459) 9월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좌승지 이극감과 세종 대에 편찬한 『의방유취』를 교정하여 인쇄할 일에 대해 상의하였다.¹¹¹⁾ 당시 『치평요람(治平要覽)』의 교정 및 인쇄도 함께 상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서적을 모두 교정하여 인쇄하기로 정하였다. 특히 『의방유취』의 경우 여러 학문에 통달한 유학자 한 사람을 총책임자로 삼고 실무는 의서습독관들이 수행하여 별도 임시기구 설립 및 녹봉지급 없이 진행하기로 정하였다.¹¹²⁾ 이후 11월 30일 양성지(梁誠之, 1415~1482)가 『의방유취』 교정의 책임자로 정해졌으며,¹¹³⁾ 4년 남짓 지난 세조 10년(1464) 1월

10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0卷 3年 11月 庚午條.
10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1卷 9年 11月 己巳條.
10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1卷 9年 11月 己巳條.
10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1卷 9年 12月 辛亥條.
10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80卷 8年 5月 丙戌條.
108)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南大阪印刷センター. 1973:46.
109)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17, 18, 19.
110)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221.
11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7卷 5年 9月 庚辰條.
11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7卷 5年 9月 癸未條.
11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8卷 5年 11月 戊申條. “命行大護軍梁誠之校正

11일 『의방유취』 교정에 많은 착오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손소, 류요, 한치량, 안극상 등 74인을 파직, 해임 또는 경력을 삭감하였다.¹¹⁴⁾

조선에서 간행한 『의방유취』의 전질로 현존하는 것은 일본 궁내성도서료(宮內省圖書寮)에 수장되어 있는 250권 252책이 유일하다. 간행 당시의 원본은 266권 264책이었으나 16권 12책이 결손된 상태다. 이 조선 간본 『의방유취』는 미끼사카에의 『조선의서지』 기록에 의하면 조금 얇은 한지에 활자로 인쇄되었는데, 사용된 활자는 실록활자로서 강화본(江華本) 『세종실록』의 활자와 비슷하며 인쇄 당시 제1책에 실려 있었을 서(序), 발(跋), 간기(刊記) 등이 누락되어 있다.¹¹⁵⁾ 이 『의방유취』는 임진왜란 시 약탈당한 것으로 200여 년 후 다끼 모토후미[多紀元簡]가 어느 의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기타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寛]가 원본에 빠진 12권을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만든 취진판(聚珍版)을 덧붙이고 조선의 원간본 활자를 모방하여 1861년에 다시 간행하였는데, 이 간본을 에도(江戸) 학훈당본(學訓堂本)이라고 한다. 이후 1981년 중국 인민위생출판사에서 에도 학훈당본을 저본으로 교정 및 표점 작업을 하여 다시 인쇄하면서 취진판을 만들 당시 다끼 모토후미의 아들 다끼 모토크엔[多紀元堅]이 쓴 서문을 수록하였다. 다끼 모토크엔의 서문에 “언제 누구에 의해 편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인용된 서목이 명 영락제 시기까지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본국의 조정에서 문관과 의관에게 명하여 찬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과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모재집(慕齋集)에 실린 양성지의 비명(碑銘)에, “『의방유취』를 교정하여 올렸다.”라고 되어 있는 글들로 그 편찬시기를 “명 정통6년(1441)에서 명 성화13년(1477) 사이인 것”으로 짐작하였다.¹¹⁶⁾ 그러므로 취진판 성립 시에 이미 원본의 서, 발, 간기가 누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미끼사카에를 비롯한 대다수 『의방유취』 연구자들은 다른 사료로부터 우회적으로 『의방유취』 편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중요한 단서가

될 기사들이 상당수 있었다. 가장 명료한 기사는 세종 27년(1445) 10월 27일 『의방유취』 편집과 감수가 완료되었음을 기록한 것이다.

집현전 부교리 김예몽(金禮蒙)·저작랑 유성원(柳誠源)·사직 민보화(閔普和) 등에게 명하여 여러 방(方)을 수집해서 분문류취(分門類聚)하여 합해 한 책을 만들게 하고, 뒤에 또 집현전 직제학 김문(金汶)·신석조(辛碩祖), 부교리 이예(李芮), 승문원 교리 김수온(金守溫)에게 명하여 의관 전순의(全循義)·최윤(崔潤)·김유지(金有智) 등을 모아서 편집하게 하고, 안평대군 이용(李瑢)과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우부승지 이사순(李師純)·침지중추원사 노중례(盧仲禮)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여 3년을 거쳐 완성하였으니, 무릇 3백 65권이였다. 이름을 『의방유취』라고 하사하였다.¹¹⁷⁾

실록의 이 기사로 『의방유취』가 세종 24년(1442)부터 세종 27년(1445)까지 3년에 걸쳐 집현전, 승문관의 문관 및 의관, 안평대군, 도승지 등에 의해 의학처방[醫方]의 수집과 의학 분야별로 구분한 후에 같은 유키리 모으는 작업[分門類聚], 편집, 감수를 거쳐 365권으로 편찬되었으며, 세종이 편찬된 서적의 이름을 ‘의방유취’로 명명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후 『의방유취』는 필사 작업을 거친 듯하다. 문종 1년(1451) 10월 9일 예조판서 이승손이 세종대왕의 『상장의례(喪葬儀軌)』를 베껴 쓴 충순위에게 자금을 더하여 주기를 주청하자 문종은 도승지 이계전(李季甸)에게 전례를 상고하게 하고서 『상장의례』를 필사한 충순위들에게 자금을 더하여 주지 말 것을 명하였다.¹¹⁸⁾ 당시 이계전은 『의방유취』와 『병요』를 베껴 쓴 사람에게 지위만 있고 실직은 없는 관직[散官職]을 더하여 준 전례를 들었다.¹¹⁹⁾ 이로써 『의방유취』가 처음 편찬된 후 필사 작업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세조의 『의방유취』 간행 의지와 『의방유취』 필사본이 존재했음은 세조 4년(1458) 4월 6일 실록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醫方類聚.”

11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2卷 10年 1月 甲子條.

115)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南大阪印刷センター. 1973:39.

116)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 『醫方類聚(第一分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4.

11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宗實錄』 110卷 27年 10月 戊辰條. “命集賢殿副校理金禮蒙、著作郎柳誠源、司直閔普和等、哀集諸方、分門類聚、合爲一書、後又命集賢殿直提學金汶·辛碩祖、副校理李芮、承文院校理金守溫、聚醫官全循義、崔潤、金有智等、編集之、令安平大君瑢、都承旨李思哲、右副承旨李師純、僉知中樞院事盧仲禮、監之、歷三歲而成、凡三百六十五卷、賜名曰醫方類聚.”

11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文宗實錄』 10卷 1年 10月 甲戌條.

11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文宗實錄』 10卷 1年 10月 甲戌條. “季甸啓曰、前此醫方類聚及兵要書寫者、皆以特旨、加散官職.”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대왕 조에 편찬한 『의방유초(醫方類抄)』는 여러 방을 갖추어 신고 있지만 권질이 크고 많아서 갑자기 간행하기에 어려우니 임시로 간요한 방서(方書)를 가지고 문(門)을 나누어 강습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¹²⁰⁾ 4월 6일 실록기사에 ‘의방유초’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두중은 ‘초(抄)’는 ‘취(聚)’를 잘못 쓴 것으로 추측하여 『의방유취』와 동일하게 생각하였다.¹²¹⁾ 그러나 세종이 분명히 ‘의방유취’로 명명한 이상 사관이 마음대로 서적 명을 바꾸어 쓸 수 없고, 글자를 잘못 쓴 것으로 보기에 두 글자가 너무 다르다. 의방유초는 원본을 간직하여 두고 열람하기 위하여 베껴 쓴 필사본 『의방유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예조에서 임시로 간요한 방서를 가지고 문을 나누어 강습하게 하라는 제안을 올린 것은, 세조가 세조 4년(1458) 의학교강법을 제정하고 의학을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의술을 전문적으로 익히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다.

○ 의학교강법(醫學考講法)을 설치하고 신속주를 의학도제조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업을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옛날의 유자(儒者)는 각각 하나의 경(經)만을 공부하였는데, 더구나 의술은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더욱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원의 처방에 관한 서적이 너무 많아 정밀하게 익힐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을 보고 약을 쓸 때에 그 요지를 알지 못하니, 많이 보되 정밀하지 못한 것보다는 분야별로 전공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또 의서는 고사(古事)에 해박하며 치밀하고 민첩한 자가 아니고는 통달하기가 쉽지 않으니, 문관을 아울러 선발하여 겸해서 익히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조목을 갖추어 올리면서 아뢰기를, “세종 조에 편찬한 『의방유취』에 여러 처방이 갖추 실려 있습니다만, 권질(卷帙)이 방대하여 갑자기 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선 간략하면서 요긴한 방서로 분야별로 강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¹²²⁾

『의방유취』는 의학 분야별로 방을 분류하여 다시 취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텍스트였다. 또한 당시는 세조 1년(1455) 강희안(姜希顔)에게 글자본을 쓰게 하여 주조한 동활자인 을해자(乙亥字)가 만들어져 있었다.¹²³⁾ 이러한 정황 상 세조는 『의방유취』를 속히 활자로 간행하여 의학 교육에 쓰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의방유취』는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당장 인쇄하여 교육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 4년(1458)까지 『의방유취』는 활자로 간행되지 않았고 열람하기 위한 필사본이 존재했으며, 세조는 새로 만들어진 을해자 동활자로 간행할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침내 세조 5년(1459) 9월 1일과 4일 당장 실생활에 요긴하게 쓰일 『의방유취』를 교정하여 인쇄할 것을 좌승지 이극감과 상의하였다.¹²⁴⁾¹²⁵⁾ 같은 해 11월 30일 양성지(梁誠之)를 『의방유취』 교정의 책임자로 정했다.¹²⁶⁾ 세조 10년(1464) 1월 11일 『의방유취』 교정에 많은 착오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손소(孫昭), 류요(柳瑤), 한치량(韓致良), 안극상(安克祥) 등 74인을 처벌하였다.¹²⁷⁾ 세조 5년(1459) 9월 4일 기사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손소(孫昭), 류요(柳瑤), 한치량(韓致良), 안극상(安克祥) 등은 의서습독관으로서 『의방유취』 교정을 수행하였던 것 같다. 『눌재집』과 『모재집』 기록에 의하면 양성지는 교정 작업을 완료하여 진상하였다.¹²⁸⁾¹²⁹⁾ 양성지가 『의방유취』의 교정 작업을 완성하여 진상한 시기는 세조 5년

12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2卷 4年 4月 癸亥條. “禮曹啓, 世宗大王朝所撰醫方類抄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分門講習, 從之.”

121)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221.

122) 한국고전번역원. (2001)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023.4.12.) 『國朝寶鑑』 11卷 世祖朝2 戊寅條.

123)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파주: 종합출판 범우(주). 2013:120.

12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7卷 5年 9月 庚辰條. “《治平要覽》、《醫方類聚》, 皆世宗時撰集之書, 不可不印. 然《治平》更校之, 則誤處多, 若《類聚》, 則不必如是之多誤矣, 且切用, 非《治平》之所及, 予欲先校《類聚》印出, 《治平》則徐徐更校, 如何?”

12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7卷 5年 9月 癸未條. “《醫方類聚》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治平》之所及也. 然以斤兩之多少、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 不可容易. 然其校正, 不必儒士. 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 可令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監領如近日《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 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別虞飲啖, 而功亦易就. 臣謂二書不可皆廢, 伏惟聖裁. 御書答之曰: 甚當. 非卿不能如是, 委卿布置.”

12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18卷 5年 11月 戊申條. “命行大護軍梁誠之校正《醫方類聚》.”

12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2卷 10年 1月 甲子條. “傳于吏曹: 孫昭等十人罷職, 柳瑤等七人罷職, 仍削前任,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任,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 以校正《醫方類聚》, 多致錯誤故也.”

(1459) 11월 30일에 착수하여 적어도 세조 10년(1464) 1월 11일까지 4년 이상 진행한 이후였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의방유취』의 교정 작업은 활자 간행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의방유취』의 간행은 양성지의 교정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취진관의 서문을 쓴 다기 모토크 역시 서, 발, 간기를 보지 못하고 조선의 실록도 고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양성지의 활동 연대로 『의방유취』의 편찬 시기를 추측하였다.¹³⁰⁾

한편 세조는 『의방유취』와는 별개로 의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다시 취합한 형태의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의학교강에 쓰일 간요한 의방서의 분야별 유취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세조 9년(1463) 11월 8일 사정전 모퉁이 창고를 헐터로 개조한 비현합에서 이부, 이준, 이철, 정현조, 이종생, 이찬, 이민, 영천경 정, 낙안경 영, 최항, 송처관, 이조참판 홍응, 병조참판 김국광 등에게 술자리를 베풀고 병서(兵書)의 편찬 및 주석과 의서유취(醫書類聚)의 일을 논의하였다.¹³¹⁾ 세조 10년(1464) 9월 8일에는 임금이 충순당에 나아가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불러서 양성지를 이조판서로, 한계미(韓繼美)를 서원군으로, 최영린(崔永潁)을 행 사헌 장령으로 삼고, 『무경(武經)』을 주석하고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한 사람들은 모두 1자급을 올렸는데, 당상관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였다.¹³²⁾ 세조 10년(1464) 9월 8일은 활자 간행을 위한 『의방유취』의 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완료되었을 수도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시기 상 세조 10년(1464) 9월 8일 양성지의 이조판서 승차 기사를 『의방유취』 교정 작업의 완성과 그 훈공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실록 원문의 “註武經及撰醫書類聚人，竝加一資，堂上官代加子壻弟姪.” 기록은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며, 이조와 병조의 입회 하에 『무경』을 주석한 사람들과 함께 가자(加資)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세조 9년(1463) 11월 8일 기사에 이조참판과 병조참판이 입시한 술자리에서 이부 등 여러 사람과 병서(兵書)의 편찬 및 주석과 의서유취(醫書類聚)의 일을 논의한 일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기사 사이에는 약 10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모두 의서유취(醫書類聚)가 병서(兵書)의 주석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두 기사의 ‘의서유취(醫書類聚)’를 『의방유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세종이 분명히 ‘의방유취(醫方類聚)’로 명명하여 서명이 고유명사화된 서적명을 사관이 마음대로 ‘의서유취(醫書類聚)’로 바꾸어 쓰는 일이 쉽게 거듭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게다가, 설령 ‘방(方)’을 ‘서(書)’로 바꾸어 쓴다 하더라도, 세조 10년(1464) 1월 11일 기사에까지 ‘교정한다(校, 校正)’로 쓰고 있던 술어를 같은 해 9월 8일에 갑자기 ‘편찬한다(撰)’로 바꾸어 쓰는 일이 있기가 쉬울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문으로 실록을 기록하는 조선시대 사관의 인식 속에서 ‘校’와 ‘撰’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어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다른 작업이라는 것이다. ‘撰’은 여러 참고서적 내용을 발췌하거나 문장을 저작하여 책을 짓는 것을 뜻하고, ‘校’는 이미 지어진 문장이나 책 내용을 다른 참고서적과 대조하여 틀리거나 빠진 곳이 없는지 살피고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실록이나 양성지의 문집인 『눌재집』, 취진관 『의방유취』 서문에도 양성지가 『의방유취』를 ‘校’ 또는 ‘校正’하였다고 되어있지, ‘撰’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세조 9년(1463) 11월 8일, 세조 10년(1464) 9월 8일 실록 기사 중 ‘의서유취(醫書類聚)’를 『의방유취(醫方類聚)』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학술적 판단을 잠시 유보해야 하지 않을까. 세조 12년(1466) 10월 2일 신숙주, 최항, 강희맹, 양성지, 구종직, 임원준, 성임, 서거정, 이과, 이에, 김석재, 정침 등에게 역(易), 천문, 지리, 의(醫) 등 여러 서적의 유취(諸書類聚)를 택하여 선별하도록 명하였다.¹³³⁾ 세조 12년(1466) 10월 24일 신숙주, 최항, 서거

128) 한국고전번역원. (2003)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023.4.12.) 『訥齋集』 6卷 附錄 南原君神道碑銘. “校進醫方類聚, 孫子注解等書.”

129) 한국고전번역원. (2003)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023.4.12.) 『慕齋集』 12卷 神道碑 梁文襄公神道碑銘. “校進醫方類聚, 孫子注解等書.”

130) 浙江省中医研究所 湖州中医院 校. 『医方类聚(第一分册)』.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81:4. “其书不详出于何代何人, 然所援引书, 乃止于明永乐间. 而其国许浚东医宝鑑曰, 本国祖宗朝命文官医官撰集. 金安国慕齋集梁文襄公碑铭称校进医方类聚, 梁名诚之, 正统六年进士, 歷仕六主, 以成化十三年没. 然则当时编纂年岁, 亦约略可知耳.”

13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1卷 9年 11月 壬戌條. “御丕顯閣. 【思政殿東隅內廂庫二間置窓牖, 以爲燕居之所, 賜名曰丕顯閣, 取《書》味爽丕顯之義也.】永順君 溥, 龜城君 浚, 銀山副正 徹, 河城尉 覺顯祖, 鎮南君 終生, 銀川君 積, 德城君 敏, 永川卿 定, 樂安卿 盛, 右參贊崔恒, 行上護軍宋處寬, 吏曹參判洪應, 兵曹參判金國光等入侍. 設酌, 論兵書纂註, 醫書類聚等事.”

132)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34卷 10年 9月 戊午條. “御忠順堂, 召吏兵曹, 令注擬. 以梁誠之爲吏曹判書, 韓繼美西原君, 崔永潁行司憲掌令, 註武經及撰醫書類聚人竝加一資, 堂上官代加子壻弟姪.”

133)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0月 庚子條. “是日, 命申叔舟, 崔恒, 姜希孟, 梁誠之, 丘從直, 任元濬, 成任, 徐居正, 李坡, 李丙, 金石梯, 鄭沈等, 各率郎廳一人, 揀選諸書類聚: 曰易, 曰天文, 曰地理, 曰醫, 曰卜筮, 曰詩文, 曰書法, 曰律呂, 曰農桑, 曰畜牧, 曰譯語, 曰算法.”

정, 강희맹, 임원준, 성임, 양성지, 이에, 이과, 김석제에게 여러 서적의 유취(諸書類聚)를 써서 바치도록 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¹³⁴⁾ 세조 12년(1466) 10월 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조는 신숙주, 최항, 강희맹, 양성지, 임원준 등에게 역학,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시문, 서법, 율러, 농상, 목축, 어역, 산법 등 실용학문에 대해 여러 서적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같은 유별로 묶어(諸書類聚)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揀撰, 書)을 지시하고 있다. 언급된 분야 중에 의학(醫)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조 9년(1463) 11월 8일과 세조 10년(1464) 9월 8일 실록 기사 중 ‘의서유취(醫書類聚)’와 유사한 형식의 제3의 의서유취(諸書類聚)의 찬(撰)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짐작하건데 여러 서적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같은 유별로 묶어(諸書類聚) 새로운 책을 편찬하는 『의방유취』 식의 방법론을 기타 기술학 분야에까지 적용하고, 의학 분야에서도 거듭 제2·제3의 의서유취(諸書類聚)를 편찬하고자 한 세조의 학술발전 정책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제서유취(諸書類聚)에 대한 추가 고찰을 통해 밝혀야 할 터이다.

성종 8년(1477) 5월 20일 한계희, 임원준, 권찬이 의서유취(醫書類聚) 30질을 인행하여 올리면서 3년 공정이 걸렸음을 아뢰고, 감인관과 전교서 별제에게 포상을 청하였다.¹³⁵⁾ 임원준은 세종 조에 의서습독관으로 재직했으며, 세조 조에는 최측근으로서 의학 분야의 다양한 일을 수행했으나 『의방유취』 관련 기사에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양성지 등과 함께 세조로부터 여러 서적의 유취(諸書類聚)를 간찬(揀撰)하거나 써서(書) 바치라는 명을 받았다. 그런 다음 성종 8년(1477) 한계희, 권찬과 함께 의서유취(醫書類聚)를 3년 만에 인행하여 올리고 호피 1장씩을 상으로 받았다. 성종 8년(1477) 5월 20일 기사의 의

서유취(醫書類聚)가 『의방유취』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금속활자로 최종 간행된 『의방유취』의 규모가 266권 264책임을 생각할 때 3년의 간행 공정은 짧은 듯하고 30질의 간행 부수는 많은 듯하다. 비슷한 시기 율해자로 인쇄된 163권 154책 분량의 『세종실록』은, 단종 2년 3월 30일 편찬 및 감수를 마친 후 처음에 한 벌을 춘추관에 보관하였다가, 세조 12년(1466) 11월 17일 양성지의 건의로 『문종실록』과 함께 당시 주조한 소자본 금속활자로 인출을 시작해 성종 4년(1473) 7월 5일 3부 간행을 완료하였다.¹³⁶⁾¹³⁷⁾¹³⁸⁾ 세조 5년(1459) 『의방유취』와 함께 교정하여 간행하기로 결정한 『치평요람』은 150권 150책 분량인데 중종 11년(1516)에 가서야 갑진자(甲辰字)로 간행되었다.¹³⁹⁾ 『의방유취』의 간행이 성종 대에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성종 8년(1477) 5월 20일 한계희, 임원준, 권찬이 30질을 인행하여 올린 의서유취(醫書類聚)를 『의방유취』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성종 20년(1489) 9월 21일 내의원에서 새로 편찬한 『구급간지방(救急簡易方)』을 올렸다. 임금이 제조 윤호와 임원준·허종에게 각각 마장(馬裝) 1부와 노구(鑪口)하나, 도롱이 하나를 내려 주고, 박안성·권건과 의원 당상 송흙·차득참에게 각각 마장 1부와 도롱이 하나를 내려 주고, 낭청 윤사하 이하에게 녹비(鹿皮) 한 장씩을 내려 주었다.¹⁴⁰⁾ 『구급간지방』은 허종(許琮, 1434~1494)이 지은 서문에 의하면 아픈 곳이 있을 때 비록 부녀자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책을 열어 처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쉽고 실용적인 처방서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때문에 처방은 물론 병명과 병증에까지 언해를 붙여놓아서 중세 국어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가 된다. 8권에 걸쳐서 127문을 두었다. 허종은 서문에서 기준에 『의방유취』, 『향약제생방』, 『구급방』이 있

13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0月 壬戌條. “又召申叔舟、崔恒、徐居正、姜希孟、任元濬、成任、梁誠之、李芮、李坡、金石梯、令書諸書類聚以進、仍設酌.”

13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80卷 8年 5月 丙戌條. “西平君 韓繼禧、左參贊 任元濬、行護軍權攢印進醫書類聚三十帙、啓曰：此書印出至三年功訖。其監印官柳潯久滯醫官、白受禧以典校署別提、已考滿、請授涓顯官、受禧祿職。傳曰：可。仍命賜繼禧等虎皮各一張。”

13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端宗實錄』 10卷 2年 3月 辛巳條. “春秋館撰進《世宗大王實錄》一百六十三帙。賜監館事鄭麟趾、知館事金銚·李季甸·鄭昌孫、同知館事崔恒、前同知館事辛碩祖、各表裏一件、鞍具馬一匹；編修官申叔舟·朴彭年·魚孝瞻·河緯地、前編修官金新民、各表裏一件、馬一匹；記注官、記事官、各加一資、仍許並用加資前仕日。碩祖、新民、時遭喪、以曾與編錄、并賜之。”

13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40卷 12年 11月 乙酉條. “世宗、文宗兩朝《實錄》、只書一件、藏于春秋館、甚爲未備。然欲書之、則事功難成。幸今新鑄小字、乞命典校署、印出三件、藏外三庫。本國書冊、敬重如《實錄》、緊關如軍案、例以鐵錫鎖其背、或以綾段粧其衣、非徒誨盜、猝有急遽、不得措其手。然又不可不曲爲之慮也。須一件重大、以備小盜之偷；須一件輕便、以備倉卒。今兩朝《實錄》一件、既已重大書藏。今以小字印出三件、除鐵錫之飾、綾段之衣而藏之、則大小之變、無所不可、而事功亦易以成矣。”

13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32卷, 4年 7月 甲午條. “春秋館印進世宗、文宗兩朝實錄。”

13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中宗實錄』 26卷 11年 9月 辛巳條. “南袞曰：校書館書籍 方印未畢、以凶年停役、如《治平要覽》、宜可畢印。上曰：畢印、可也。”

14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232卷 20年 9月 丙子條.

지만 당시의 현실에 적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성종의 명에 의해 윤호, 임원준, 박안성, 권건, 허종이 고방(古方)을 수집하여 질병은 급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약은 적고 쉬운 것을 우선으로 하여 정선되면서도 다 갖추도록 구성하였음을 피력하였다.¹⁴¹⁾ 그러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각자가 수행한 역할을 구분하여 명시하지는 않았다. 허종이 작성한 『구급간이방』의 서문을 임원준이 쓴 『창진집』 서문과 견주어 보면 다소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내용의 논리적인 배열과 핵심전달 및 문장의 매끄러움 등이 임원준의 글 솜씨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의서는 의학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어 선택과 사물의 변화 추이 및 생각의 전개에 따른 의학 내용의 논리적인 배열이 필수적이다. 임원준이 단독으로 주해한 『의약론』이 현존하지 않고, 직접 편찬 혹은 간행했을 『의서유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서를 통해서 임원준의 의학사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창진집』 서문을 통해 임원준이 의서를 편찬하거나 주석, 해제를 지을 만한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한문 문장을 구성하는 글 솜씨를 가졌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일찍이 세종에 의해 의서습독관으로 발탁되었을 것이며, 이후 문과 대과에 장원 급제 및 문관으로서의 화려한 전력 역시 상당 부분 그의 뛰어난 문장력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임원준이 재편집하고 일부 주석을 가한 『창진집』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창진에 대한 조선 전기의 의료 수준과 함께 임원준의 의학 사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결론

조선 개국 후 의사(醫事) 제도에 있어서 내약방을 내의원으로 개칭하여 독립시키고 전의시를 전의감으로 개칭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고려의 의사 제도를 대부분 계승한 가운데, 전의감에 속한 의학습독관은 이문(吏文), 천문, 한학, 무경 습독관과 함께 세종 조에 조선에서 처음 실시한 독창적인 제도였다. 조선의 습독관 제도는 해당 분야의 기술관 외에 별도로 양반의 자제를 선발

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도록 집중 교육함으로써 장차 그 분야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특수 교육제도’였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국 후 제도와 문물을 정비해나갔던 조선 조정에서 의학, 천문학, 외교, 군사 분야 기술관들의 국정수행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치자 특수 교육제도를 설립하여 양반 지배계층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타개해 나가자 한 것이었다. 의학습독관은 의서습독관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세종 조에 처음 설립될 때는 정원이 9명이었으나 단종 조에 15명, 세조 조에 30명으로 증원된 후 1485년 『경국대전』에 전의감 소속으로 수록되면서 조선의 공식적인 의사체도가 되었다. 1867년 반포된 『육전조례』에도 전의감 소속 30명 정원으로 수록되어 공식적으로는 이 시기까지 조선의 의사체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의학에 대한 학습을 주요 직무로 하였지만 학생이 아닌 관원이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주로 무반의 임시직을 겸하여 제수하였다. 『경국대전』 규정에는 종9품에서 종7품의 임시직을 주되 1년에 두 번 근무 일수를 산정하여 450일을 채우면 품계를 올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근무 일수를 채우면 대과의 예비시험인 관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거나, 의학 공부 실적이 뛰어난 경우 국왕에게 보고하여 정식관리직에 제수하거나, 공부를 마친 경우 동서반 직에 자리가 나는 대로 사용하는 등의 권장규정을 두었다. 즉 의학 학습을 마친 후 반드시 의관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문관이나 무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반 자제들의 의서습독관 근무를 권장하였고, 동시에 다른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의서습독관의 본직을 겸하게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의학 인재 양성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의서습독관에 대하여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평생 의무직’의 성격을 띠도록 한다. 그러므로 의서습독관의 직무는 의학 학습뿐 아니라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 겸하여 수행한 의학 관련 국정에까지 사실상 확장된다. 세종 조 25세 이전에 의서습독관으로 발탁되어 의학을 공부한 후 세조 2년(1456) 34세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연산 조에 이르기까지 일반 문관으로서의 이력을 나타내면서 의학 관련 업적도 겸하여 보이는 임원준(任元濬, 1423~1500)의 사적을 추적하여 봄으로써 의서습독관의 확장된 직무 범위를 알 수 있었다.

임원준은 호조, 병조, 형조, 예조의 참판과 공조, 예조의 판서 및 의정부 좌·우 참찬, 경연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그

141) 김신근 編. 韓國醫學大系 2. 尹燾, 任元濬, 朴安性, 權健, 許琮 撰. 『救急簡易方』. 서울:여강출판사. 1988:3-8. 序

직에 관계없이 왕명에 의해 세조, 의경세자, 예종, 성종, 정희왕후 윤씨, 인수대비 등 국왕 가족과 영웅대군 이염 등 왕실종친 그리고 강맹경, 홍일동 등 조정 관원을 진료하였다. 성종 16년(1485)에는 역시 의서습독관을 거쳐 당시 공조판서 직에 있던 권찬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을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약의 제약을 명령받기도 하였다. 침술보다는 주로 방약을 써서 진료하였는데 상당한 임상 실력으로 신숙주에 의해 명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거나 현직 의관이 실패한 케이스에 투입되거나 제1어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세조를 치료하고 인수대비의 오랜 병환을 낮게 한 후에는 자신의 관직이 승급되는 것은 물론 만아들인 임사홍에게까지 관직 서용 또는 재임용의 혜택이 주어졌다. 임원준의 의료 능력으로 자신이나 아들 임사홍의 문관 작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성종 대에 중앙에 진출한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다.

세종 26년(1444) 과거 시험에서 신윤저, 신윤보 등과 서로 대리로 답안을 작성해준다 발각되어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두 차례에 걸친 신원요청 상서도 세조에 의해 기각되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종 즉위년(1452) 30세에 의서습독관 행 부사정으로서 의학교육 강화, 여러 도의 좌우 계수관 의국 설치와 조제약 판매, 향약 사용 권장, 침구전문법 재건과 침과 약의 병용 등 의학발전 정책을 입안하였다. 단종 3년(1455) 전의감 제조에 의해 의학교육의 적격자로 지목된 후 세조 5년(1459) 37세에 역시 의서습독관을 거쳐 진료 및 의학교육을 수행하였던 전순의의 후임으로 의학교육을 맡기 위해 상중에 예문관 직제학의 관직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형조참판으로서 생약포 별좌의 인사고과에 관여하거나 의학교육의 행정을 수행하였고, 성종 14년(1483) 61세부터는 전의감의 제조로 오래 재직하면서 본격적으로 의학 분야 인사와 행정을 관장하였다. 조선 의학사에서 보자면 의서습독관 제도를 설치한 주요 목적이 임원준이 전의감의 제조가 됨으로써 달성된 것이었는데, 임원준은 전의감 제조가 된 후 인사권 장악을 개인의 치부에 이용한 사적을 보이는 한편 더 나은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 같은 건설적인 사적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세조 3년(1457) 세조의 명으로 세종 대에 편집, 간행하였던 『창진집』을 보완, 주석, 재편집, 교정하여 재발간하면서 임원준은 재편집과 어려운 부분에 대한 주석 및 서문의 작성을 담당하였다. 명나라 사신단에 속하여 의서를 구해오는 임무를 맡거나 전순의와 함께 국왕과 왕세자 조정 관원들 앞에서 의학을 강독하기도 하였다. 세조 9년(1463)

세조대왕이 지은 『의약론』의 주석과 인쇄, 반포를 담당하였다. 세조 12년(1466) 10월 2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신숙주, 최항, 강희맹, 양성지 등과 함께 의학을 포함한 역학, 천문, 지리 등 실용학문에 대해 여러 서적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같은 유별로 묶어(諸書類聚) 책으로 엮어내는 작업(揀撰, 書)을 하명 받았다. 언급된 분야 중에 의학(醫)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조 9년(1463) 11월 8일과 세조 10년(1464) 9월 8일 실록 기사 중 ‘의서유취(醫書類聚)’와 유사한 형식의 제3의 의서유취(諸書類聚)의 찬(撰)을 주문받은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종 8년(1477) 한계희, 권찬과 함께 ‘의서유취(醫書類聚)’ 30질을 인쇄 간행하였다. 지금까지 의서유취(醫書類聚)를 『의방유취』와 동일시하여 임원준이 『의방유취』의 성서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임원준과 이와 관련된 양성지의 사적 및 『의방유취』 실록 기사를 자세히 고찰한 결과 의서유취(醫書類聚)가 『의방유취』와 동일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임원준이 『의방유취』 성서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었다. 성종 20년(1489)에는 윤호, 임원준, 허종이 『구급간지방』을 편찬, 간행하면서 허종이 서문을 작성하였는데 글썽씨가 임원준이 작성한 『창진집』 서문에 미치지 못하며, 역할분담을 명시하지 않아 임원준이 어떤 작업을 주로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의약론』이 현전하지 않고 의서유취(醫書類聚)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창진집』의 서문과 주석, 해제를 통해서 임원준의 의학사상을 알아볼 수 있겠다. 의학지식의 정확한 전달과 생리병리 현상의 논리적인 전개가 중요한 의서의 특성상 임원준의 사고력과 논리력, 한문 문장을 구성하는 글썽씨가 의서습독관으로 발탁된 주요 원인이 되었고 이후의 문관으로서의 화려한 이력에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왕조실록에 나타난 임원준의 사적을 추적하여 봄으로써 의서습독관의 전체적인 직무 범위와, 아울러 조선의 의서습독관 제도가 당시의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를 알아보았다.

임원준의 사적을 통하여 의서습독관의 직무 범위는 의서습독관 당시의 의학 학습에 그치지 않고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 겸하여 수행하는 임상 진료, 후진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과 국왕 및 일반 관원을 위한 의학강독, 의학제도 입안, 의학 분야 인사 및 행정, 의서의 수입과 편찬 등 의서에 관한 제반 업무, 신약 제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학습 후 직무 중 왕실에서는 왕과 대비에 대한 임상 진료에 가장 후한 점수를 주었으나, 조선의 의학 발전이라는 의학사적 관점에서는 전의감의 제조가 되어 의

사(醫事)의 사령탑을 관장한 일에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조선의 의서습득관 제도는 의학과 당시 조선의 지배적 학문이던 유학 간에 인재를 공유하여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음양오행 이론, 체세구민 이념이 국가 행정, 교육, 출판문화, 유교적 '효'철학 실천에 이르기까지 전과되게 함으로써 조선의 의학 발전을 견인하는 인재풀이 폭넓게 형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사편찬위원회. (2017)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經國大典』.
2. 한국고전번역원. (2001)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2023.4.12.) 『國朝寶鑑』.
3. 국사편찬위원회. (2018)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law> (2023.4.12.) 『六典條例』.
4.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端宗實錄』.
5.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文宗實錄』.
6.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成宗實錄』.
7.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祖實錄』.
8.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世宗實錄』.
9.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燕山君日記』.
10.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睿宗實錄』.
11. 국사편찬위원회. (2015)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2023.4.12.) 『中宗實錄』.
12. 한국고전번역원. (2003)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023.4.12.) 『訥齋集』.
13. 한국고전번역원. (2003)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023.4.12.) 『慕齋集』.
14. 김신근 編. 韓國醫學大系 2. 尹壕, 任元濬, 朴安性, 權健, 許琮 撰. 『救急簡易方』. 서울:여강출판사. 1988:3-8.
15. 허준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신증보대역 東醫寶鑑』. 서울:법민문화사. 2012:252.
16. 李佑成 編. 瘡疹集·太醫院先生案. 任元濬 校編. 『瘡疹集』. 서울:亞細亞文化社. 1997. 序.
17.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 『醫方類聚(第一分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1:1-730.
18.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담구당. 1981:3-584.
19. 김성수. 「16세기 향촌의료 실태와 사족의 대응」. 한국사연구. 2001;113:29-56.
20. 김성수. 「조선시대 의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체성」: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역사 속의 의사들』. 서울:역사공간. 2015:69-103.
21. 김종석. 「조선 세조 년간의 의학정책과 의관들의 활동」.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2-33.
22. 김중권. 「조선초 의서습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998; 15:51-76.
23. 박선미. 「조선전기 의학교육 강화책의 내용」. 한국교육사학. 1995;17:39-61.
24. 성호준. 「유의의 개념정립과 장개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20(1):125-136.
25. 손홍렬. 『한국의학사연구』. 서울:수서원. 2013:3-488.
26. 신동원. 「조선후기 의원의 존재 양태」. 한국과학사학회지. 2004;26(2):197-246.
27.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1-80.
28.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득관의 운영과 활동」. 연세의사학. 2019;22(1):145-180.
29. 정다함. 「조선초기 습득관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 진단학보. 2003;96:33-71.
30. 천혜봉. 『한국 금속활자 인쇄사』. 과주:종합출판 범우(주). 2013:1-476.
31. 李经纬, 林昭庚. 『中国医学通史(古代卷)』.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0:1-732.
32.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南大阪印刷センター. 1973:1-443.